

여수 제2024-11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선 명 : 하멜

선박번호 : 9870226

항 로 : 여수-거문

사업자명 : (주)케이티마린

사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111번길
33(청학동) 3층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객선 하멜호 운항관리규정

(내항여객운송사업)

2024년 07월 26일



주식회사 케이티마린

[선박 사양서]

○ 선명	하멜호		
○ 선박번호	9870226		
○ 총톤수	590 톤		
○ 선적항	파나마		
○ 선질	알루미늄합금		
○ 선박제원	길이(전장)	37.98 m	
	너비	11.30 m	
	깊이	3.80 m	
○ 최대승선인원	선원 7명	여객 423명	총 430명
○ 항로구역	여수-나로도-손죽도-초도(의성/대동)-거문		
○ 조선지	베트남		
○ 조선자	DAMEN		
○ 진수일	2024년 3월 29일		
○ 주기관 종류와 수	MTU 16V2000 M72 × 4기		
○ 주기관 출력과 수	1,440kw × 4		
○ 추진기의 수	Waterjet × 4		
○ 속력	최고속력 42노트	항해속력 35노트	
○ 항해상의 제한규정	선박안전법에 따라 항해예정시간 2시간 미만인 구역의 항해에 한함		



목 차



제1장 목적 및 정의	1-1
제1조(목적)	1-1
제2조(용어의 정의)	1-1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1
제3조(안전관리 목표)	2-1
제4조(안전관리 방침)	2-1
제5조(방침 등의 숙지 및 확인)	2-1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2-1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3-1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3-1
제8조(안전관리조직)	3-1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4-1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4-1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4-1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4-3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4-3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5-1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5-1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검사)	5-1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6-1
제15조(채용·배승관리)	6-1
제16조(인수인계)	6-1
제7장 여객선 운용계획의 수립	7-1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7-1
제18조(항해업무)	7-1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7-5
제20조(통신업무)	7-7
제21조(여객업무)	7-7

제22조(여객준수 사항의 전달)	7-9
제23조(화물관리)	7-10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7-11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7-11
제26조(정박 및 계류)	7-12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7-12
제8장 비상상황 대응	8-1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8-1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8-1
제29조(비상대응)	8-1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8-3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8-4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9-1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9-1
제33조(육상설비 점검)	9-1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9-1
제35조(유류관리)	9-2
제10장 자료관리	10-1
제36조(문서관리)	10-1
제37조(문서생산 등)	10-1
제38조(문서관리대장)	10-2
제39조(문서의 폐기)	10-2
제40조(해도관리)	10-2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10-2
제41조의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10-3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11-1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11-1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11-1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11-1
제45조(규정의 적용)	11-2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9]붙임목차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자”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여객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해사안전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 해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7. “육상작업원”이란 육상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이란 선박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항해계획”이란 기점·종점, 기항지, 항행경로, 항해속력, 운항횟수, 출항시간, 계절 운항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운항기준도”란 항로(기종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표준운항시각, 항해속력,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기타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박의 항로도도를 말한다.
11.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정한 위험물 및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과 총포, 도검류 등을 말한다.
12. “화물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13. “화물의 적재한도”란 「선박안전법」 제28조의 복원성 유지 및 제12호의 차량적재도 등에 따른 차량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화물 등 선내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적재중량을 말하며 운항관리규정 심사 시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4.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15.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회사는 관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안전운항
2. 환경보호
3.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4. 고객만족

제4조(안전관리 방침) 회사는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방침을 수립·시행한다.

1.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2.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비상대응훈련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4. 법령에서 규정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① 회사는 인명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이행·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행·유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은 회사의 운항 관리규정이 항상 양질의 수준으로 운영·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항 지양
3.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선원(예비원 포함)의 채용
4. 과승·과적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화물 집계표 확인 및 정확한 화물

계측 실시

5.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원의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6. 위험물 적재·운송방법 숙지 및 관련법령 준수
7.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8.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해상 직원의 책임, 권한,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안전운항을 위한 최신정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전관리조직) ① 회사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② 본사 및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케이티마린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111번길 33, KTM빌딩	051-441-0692 (051-441-0695)

나. 관할구역

- 전 항로 총괄 / 대표소 관할 항내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전 항로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물적인 지원을 하며, 여객선 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
- 본사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 육상직원 및 해상직원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선원의 배승 및 휴가에 관한 업무

2. 여수(지점, 영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주)케이티마린 여수지점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2층 204호	061-810-3331 (0507-803-5680)
거문도 영업소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87-53	061-666-3332

나. 관할구역

- 전 항로 총괄 / 매표소 관할 항내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승선권의 판매와 개찰 및 여객의 승선과 하선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접안 중 안전관리 및 터미널 내 승강대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 선박의 이·접안 및 여객 승·하선, 화물수송 등 안전관리
- 선박의 정비계획 수리 집행 및 선박검사 수검준비에 관한 업무
- 관계기관 등의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에 관한 업무
-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③ 안전관리조직도는 [붙임18]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 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중 1인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이하 “운항관리센터”라 한다)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규정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운항 및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를 총괄한다.
2.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한다.
3. 선박의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수송의 안전을 확보한다.
4. 안전관련 육상직원 및 육상작업원을 지휘하고,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5.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선원을 지도·감독한다.
6. 여객선의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증서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7.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시설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
 8. 여객의 승·하선시설 및 부잔교(육상시설 포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0.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이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11. 관계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선박의 변경, 항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선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신청한다.
 12. 운항관리규정 관련 문서를 관리한다.
- ②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수석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2.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 및 기타 비상대응체제를 이행하고 유지한다.
 3.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선원 및 육상직원에게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여객선사 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한다.
- ③ 회사의 규모 및 안전관리조직 인원에 따라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업무대행을 선임안전관리책임자에게 하며, 업무대행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여수지점에 근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 운항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¹⁾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총괄하여야 하므로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으며, 선원 또는 예비선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승선절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선시설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총괄
4.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 보관·관리
5. 여객대피시설 등 여객선 내 여객시설에 대한 관리

② 화물담당자는 화물(위험물을 포함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물의 적재 및 하역에 관한 업무 총괄
2. 화물의 적재에 관한 선장·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협의 및 안전조치

1) 「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4와 관련한 별표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한 자

3. 육상작업원에 대한 관리업무 총괄
 4. 화물선적 작업완료 시 선장에게 화물목록 제출
- ③ 해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채용·배승·휴가에 관한 사항
 2. 선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선원 직무교육 및 여객안전관리선원에 대한 교육·관리
 4. 제반증서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④ 공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수리, 선용품 및 기부속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관리
 3. 선박의 정비계획과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확인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객과 화물보호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시행하고 「선원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장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선원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인명, 여객선 및 환경보호와 화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에 최우선적인 결정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에 물적·인적 지원 요청 권한을 갖는다.

④ 선장은 선박의 통상업무 중 여객관리는 항해사 또는 여객안전관리선원²⁾ 화물관리는 항해사, 정비관리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선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제5항에 따라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본선 선원이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① 선장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승진·배승 관리) ①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선원의 채용·승진 및 배승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의 채용·승진 시에는 승무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지휘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선원 채용·승진에 있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선원과 선박 관련증서 및 선원 교육훈련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선원의 승선, 항해시간별 적정 인원배치 및 승선선원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선원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의 인수인계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선장 이외 선원의 인수인계서는 선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상 업무 및 비상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임무와 책임
2. 선원의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요령
4.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할 수 있다.

⑤ 선장 또는 기관장의 업무대행을 위해 예비 선장 또는 예비 기관장으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항해·기관·구명·소방 및 통신설비 작동 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2. 연료유 및 윤활유 잔량, 수급계획 또는 수급일정 등
3. 여객실 및 여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또는 정비 계획
4. 관계기관 수발신 공문철 및 주요 선박 증서
5. 기타 주요 업무 등

제7장 여객선 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여객선 하멜호의 제원 및 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

선종	진수일자	총톤수	기관출력
초쾌속여객선	2024.03.29	590톤	1,440kW×4
선박치수(m)	최대/항해속력	항로	항해구역
37.98×11.30×3.80	최대 42 노트 항해 35 노트	여수-거문	연해

② 여객선 하멜호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승선인원 : 430명(여객 423명, 선원 7명)
2. 승무정원 : 증서 상 정원 4명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항성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일일 운항 종료 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수밀문, 선수문 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4. 화물 적재상태
5. 여객 안전 확보 상태
6.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시계제한, 악천후, 좁은수로 통항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항·출항시 및 항계 내에서 운항할 경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관리청 고시에서 정한 속력 준수)
2. 시계 불량 시 좁은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을 배정한 항해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하여야 한다.
-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항로는 다음과 같다.

항로	출발지 (기점)	기항지	종착지 (종점)	항해 속력	항해 거리 (마일)	운항 시각
여수-거문도	여수	나로도-손죽도-초도(의성/대동)-거문도(동도/서도/고도)	거문/여수	35노트	57(의성)	2시간 05분
					59(대동)	2시간 10분

2. 기점·종점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종점(위치)	거리	비고
여수 (34° 44.33' N, 127° 44.00' E)	나로도 (34° 27.96' N, 127° 27.15' E)	23마일	
나로도 (34° 27.96' N, 127° 27.15' E)	손죽도 (34° 17.23' N, 127° 21.37' E)	14마일	
손죽도 (34° 17.23' N, 127° 21.37' E)	초도(대동) 34° 14.47' N, 127° 14.61' E 초도(의성) (34° 13.39' N, 127° 15.17' E)	8마일	
초도(대동) 34° 14.47' N, 127° 14.61' E 초도(의성) (34° 13.39' N, 127° 15.17' E)	동도/서도 (34° 03.15' N, 127° 17.72' E)/ (34° 02.78' N, 127° 18.68' E)	11마일(의성)/ 13마일(대동)	
동도/서도 (34° 03.15' N, 127° 17.72' E)/ (34° 02.78' N, 127° 18.68' E)	거문도 (34° 01.65' N, 127° 18.49' E)	1마일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 및 저수심 : 없음

나. 사격 및 훈련구역 : 항행통보 또는 관계기관의 통보에 따름

다. 어선조업·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 1) 여수반도~돌산도 사이 : 폭 180m / 길이 370m
- 2) 장군도와 돌산대교 교각 2개 사이
- 3) 백야도와 제리도 사이
- 4) 외나로도도와 내나로도 사이(외수도)

라. 관제구역·통항분리수역·특정해역

- 1) 관제구역 : 외나로도 끝단 ~ 거문도
- 2) 통항분리수역 : 역만도~거문도 사이

마.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 없음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가. 출항 시

연번	보고지점	위도 / 경도	보고처
1	여수항	34 ° 44.33' N / 127 ° 44.00' E	운항관리센터 68번
2	나로도	34 ° 27.96' N / 127 ° 27.15' E	운항관리센터 68번
			여수연안 VTS 71번
3	손죽도	34 ° 17.23' N / 127 ° 21.37' E	운항관리센터 68번
			여수연안 VTS 71번
4	초도	34 ° 14.47' N / 127 ° 14.61' E(대동)	운항관리센터 68번
		34 ° 13.39' N / 127 ° 15.17' E(의성)	여수연안 VTS 71번
5	거문도	34 ° 01.65' N / 127 ° 18.49' E	운항관리센터 68번

나. 입항 시

연번	보고지점	위도 / 경도	보고처
1	거문도	34 ° 01.65' N / 127 ° 18.49' E	운항관리센터 68번
2	여수항	34 ° 44.33' N / 127 ° 44.00' E	운항관리센터 68번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구 간	위도, 경도
가. 항구를 출입할 때	각 기항지 입·출항 시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여수항~대경도~소경도 사이 백야도~제리도 사이 외나로도~내나로도~사양도 사이 거문도(동도)~서도 사이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6.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가. 태풍 내습 시 :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로 선정

나. 기상악화 시 :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로 선정

8. 항로도에 관한 사항

가. 운항항로에 대한 항로 등이 표시된 해도를 보유하여야 한다.(「선박설비기준」 제93조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나. 해도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해도를 최신본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 통제 기준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 33조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상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풍 속	파 고	가 시 거 리
최대풍속 13 ^m / _s 이상	최대파고 3.1m 이상	1km 이내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임시정박하여야 하며, 임시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경계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른다.

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③ 선장은 출항 시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전기자전거, 위험화물 등 포함)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5.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6.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7.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대리점이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현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운항관리규정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

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표2]에 따른 보고사항을 운항관리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진·출입시간 보고시 ‘채널 VHF 71’, 여수 운항관리센터는 ‘채널 VHF 68’, 비상시는 ‘채널 VHF 16’ 으로 교신한다.

⑤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대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선 선원 이외 체험이나 행사 등의 목적으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등을 출입시키지 아니한다.

③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승강대 입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④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⑥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⑦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 ⑧ 선장은 본선 선원 중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⑨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 ⑩ 「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간 보관(전산매표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⑪ 선내에서 승선권 발매 시 승선권의 해당란에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항 즉시 사무실로 전송하거나 전산발권을 하여야 하며, 출항 시간별로 분리하여 수밀이 되는 용기에 보관 후 입항 즉시 사무실로 발송한다. 단, 전자적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승선권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 ⑫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 ⑬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선에는 여객실 설비의 위치 및 종류 등이 표시된 일반 배치도[붙임2]를 여객실의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제

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수엄금」 또는 「손대지 맙시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4.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 「머리조심」 표지판을 부착한다.
 5. 선내 편의시설(자판기, 정수기 등)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6.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7.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를 파악한다.
- ⑭ 선장은 운항 중 여객이 화물구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출항 후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3. 구명조끼 등 사용법
4. 항행시간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에서 흡연 금지
 5. 정원·화물 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 ③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
2.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와 비상탈출요령
3. 구명조끼 및 소화설비 보관장소
4. 각 여객실의 정원
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제23조(화물관리) ① 화물의 적재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화물의 최대적재중량 : 3.0톤
- ※ 일반화물은 지정된 장소를 준수하여 적재한다.
- ② 선장이 일반화물의 적재로 인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장은 적재화물의 종류, 수량을 확인하고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적재 시 선내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그 외의 장소(갑판, 통로)에는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화물은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출항 10분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한 후 화물구역을 폐쇄하여

야 한다.

5. 선장은 일반화물의 적재상태를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가. 갑판 내의 소방설비, 출입구, 계단 주위의 1m 이내 및 통로에는 보호띠를 설치하거나 구역을 표시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나. 기타 사항은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6. 선장은 여객선 운항 중 선원이 화물의 고박상태 등 이상 유무를 매시간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7. 여객선 운항 중 전기자전거 등 전기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는 이동수단의 배터리 충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성 자료를 유지·관리하여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그 사본 각 1부를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위험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당 위험물(휴대품 포함)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적재하지 아니한다.

3. 여객이 휴대한 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에 한하여 적재가 가능하며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이 수거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³ 하여야 한다.

4. 적재관리 책임자는 선장이 지정하며,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표시하고 일반화물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장소 : 선미 창고 - 담당자 : 1등항해사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선적되거나 남아있는 화물의 상태 및 양, 배치
5. 선저폐수의 양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기상상태
12.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여객승선구역 작업
4.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5.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3)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또한 위험물운송적합증서 목록에 있어야 운송가능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지 말 것
6. 육상근무자는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선장은 운항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 배치표[붙임9]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밀폐구역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붙임3] 또는 그림, 비상 신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조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 규모, 선박 위치, 소화지원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긴급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구조기관의 지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우선한다.

⑤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 지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붙임11의 비상시 신호체계 및 승객의 행동요령 참고)

퇴선 시 대피장소 담당			
1번 탈출구	2번 탈출구	3번 탈출구	4번 탈출구
기관사A	항해사A	항해사B	기관장

⑥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비상상황 연락기관】



【비상조직도 및 임무】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 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한다.

가. 여수전남병원(전화번호 061-640-7575)

나. 여수백병원(전화번호 061-655-3000)

다. 여천전남병원(전화번호 061-690-9000)

라. 그 외 여수 관내 병원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수시 보고하며 입항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한 자료제출, 사고원인 조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강사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선장은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시행주기 및 시나리오는 [붙임10]과 같다.

⑤ 선원 법정교육은 [붙임5]와 같이 실시한다.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사항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례·특별점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 별지 제3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기한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2]과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붙임8)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항해등, 기적의 작동 상태 및 종 등의 비치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구명, 소방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소, 긴급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직인원 배치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일지

및 기름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할 경우 즉시 유조차량과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자료관리

제36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1등항해사, 1등기관사로 정하며 부서 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부서장(부재시 최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8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붙임14] 문서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해도관리)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변경허가 대상을 말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 사업자는 「해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안전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 선령,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사고 이력(「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4.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해운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② 사업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운항관리센터,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붙임15]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등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심사를 필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제45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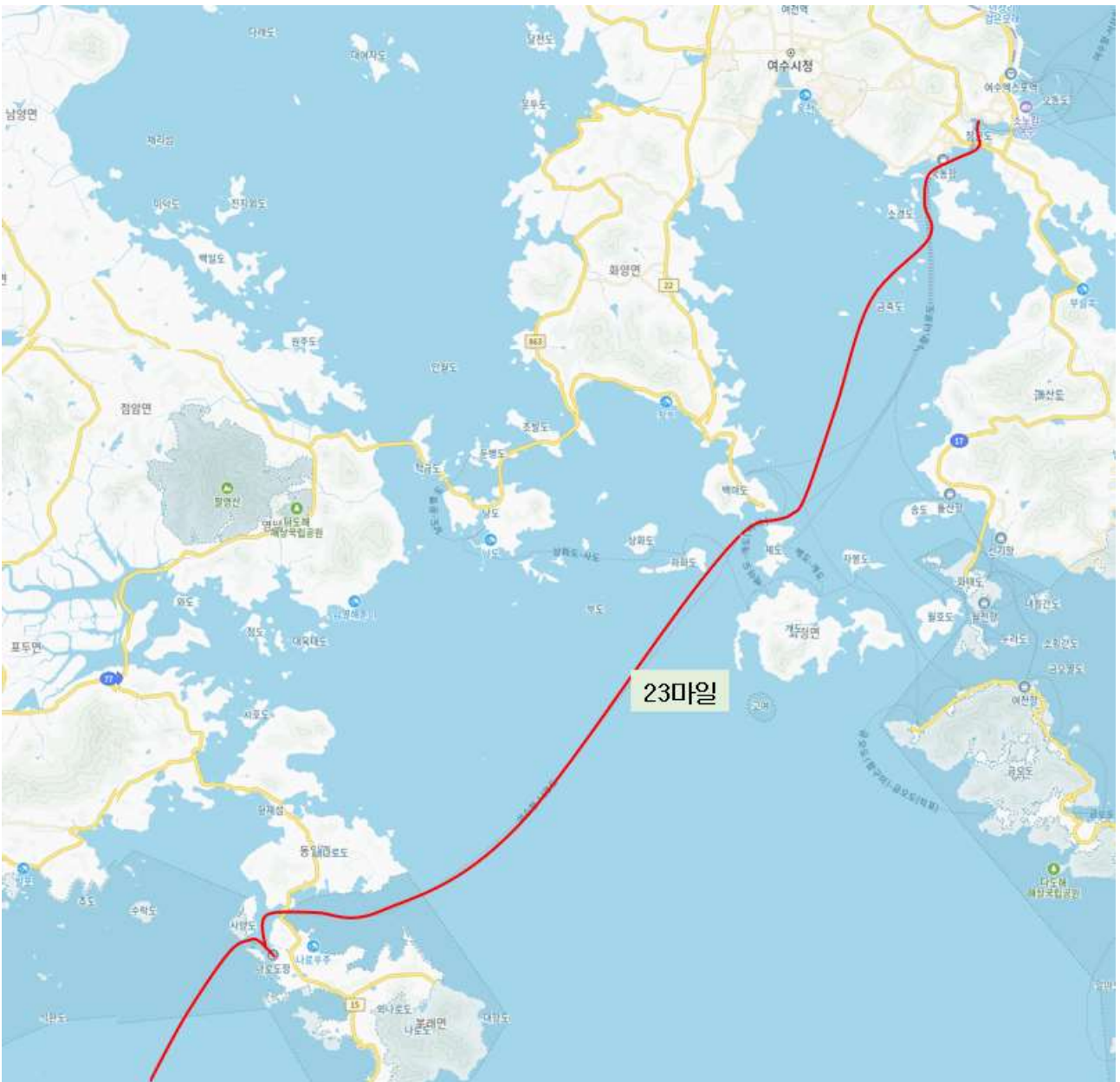
붙임 목차

- [붙임 1] 항로도
- [붙임 2] 일반배치도
- [붙임 3] 인명구조장비
- [붙임 4] 화재제어도
- [붙임 5] 선원법정교육 목록
- [붙임 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붙임 7]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 [붙임 8] 선박계획정비표
- [붙임 9] 비상부서 배치표
- [붙임 10]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 [붙임 11]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붙임 12]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 [붙임 13] 선박 문서 보존연한
- [붙임 14] 문서관리대장
- [붙임 15] 내부심사절차서
- [붙임 16]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 [붙임 17] 여객선 정기 점검표
- [붙임 18] 안전관리조직도

항 로 도(전체구간)



항 로 도(여수-나로도)



항 로 도(나로도-손죽도)



항 로 도(손죽도-초도(의성/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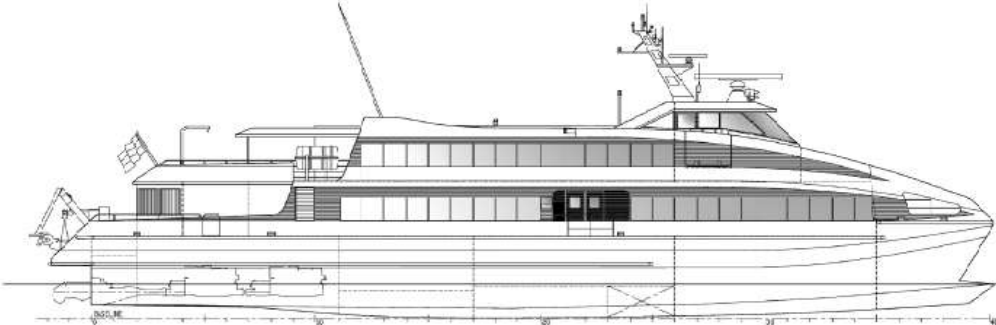
항 로 도(초도(의성/대동)-동도/서도-거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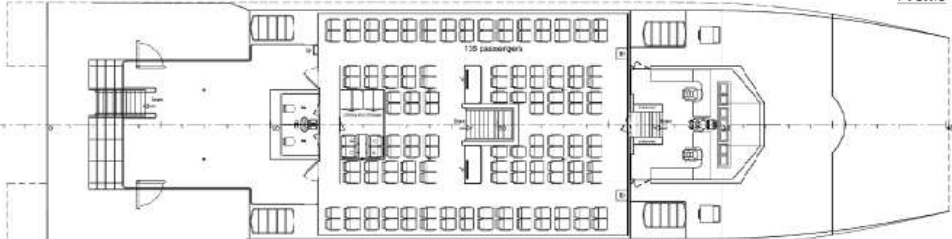
항로도(거문도-나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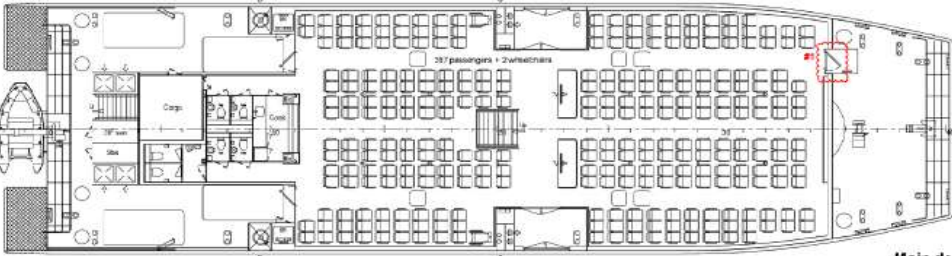
[붙임 2] 일반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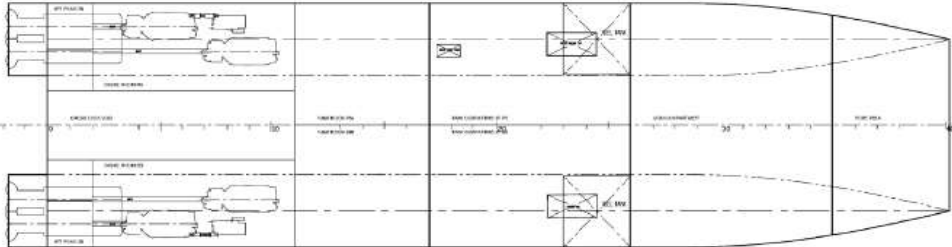
Profile



Upper d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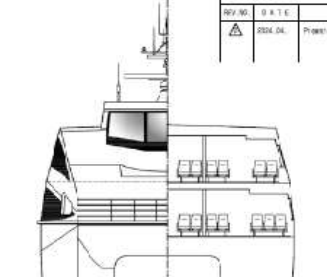


Main deck



Lower deck

BIBLIOGRAPHY			
REV. NO.	DATE	DESCRIPTION	REMARKS
1	2024.04.	Project as Requested (Task: 130-041)	




Bow view Typical cross section

[K] Information

- <K> 안전성이 80% 미만의 재료는 사용되지 않아 합니다. (고박선기준 불포) 1.3.6)
- <K> 본선의 항해양정시각은 2시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선박양정기준 3.6.3)

[K] Comment (C)

- <C> 모든 수동적인 출입 시설 및 외벽은 방향 및 수직선이 일치하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수직선이 일치하는 위치에서는 일치하는 위치에서 부속되어야 합니다. (고박선기준 불포) 2.5.2.2)
- <C> 전 승무원 승무 수직선 (breastpoint line)의 위치를 모든 여객 고정장치 (shoulder harness)를 가지는 불포가 모든 조종석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고박선기준 불포) 4.5.1)
- <C> 여객 승 선위를 위한 승객석은 후방승객석 (뒤쪽)을 포함하여 40027)에 적정한 안전불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고박선기준 불포) 4.5.2)
- <C> 승무원석 및 승객석의 위치를 선박의 항해성능 및 조종성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고박선기준 불포) 5.9.1) 및 10.1.2)
- <C> 선형 안전선에 일치하는 모든 PFD 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 1), 고박선기준 4.7.1) 및 4.8.1) 및 4.10.1) 및 4.11)



PRINCIPAL PARTICULARS	
LENGTH	O. A. 42.160 M
LENGTH	B. P. 40.180 M
BREADTH	O. A. 11.800 M
BREADTH	(MLD.) 11.300 M
DEPTH	(MLD.) 3.800 M
DRAFT	(EXT.) 1.570 M
CREW	7 PERSONS
PASSENGER	423 PERSONS

WITH COMMENTS

REVIEWED

2024.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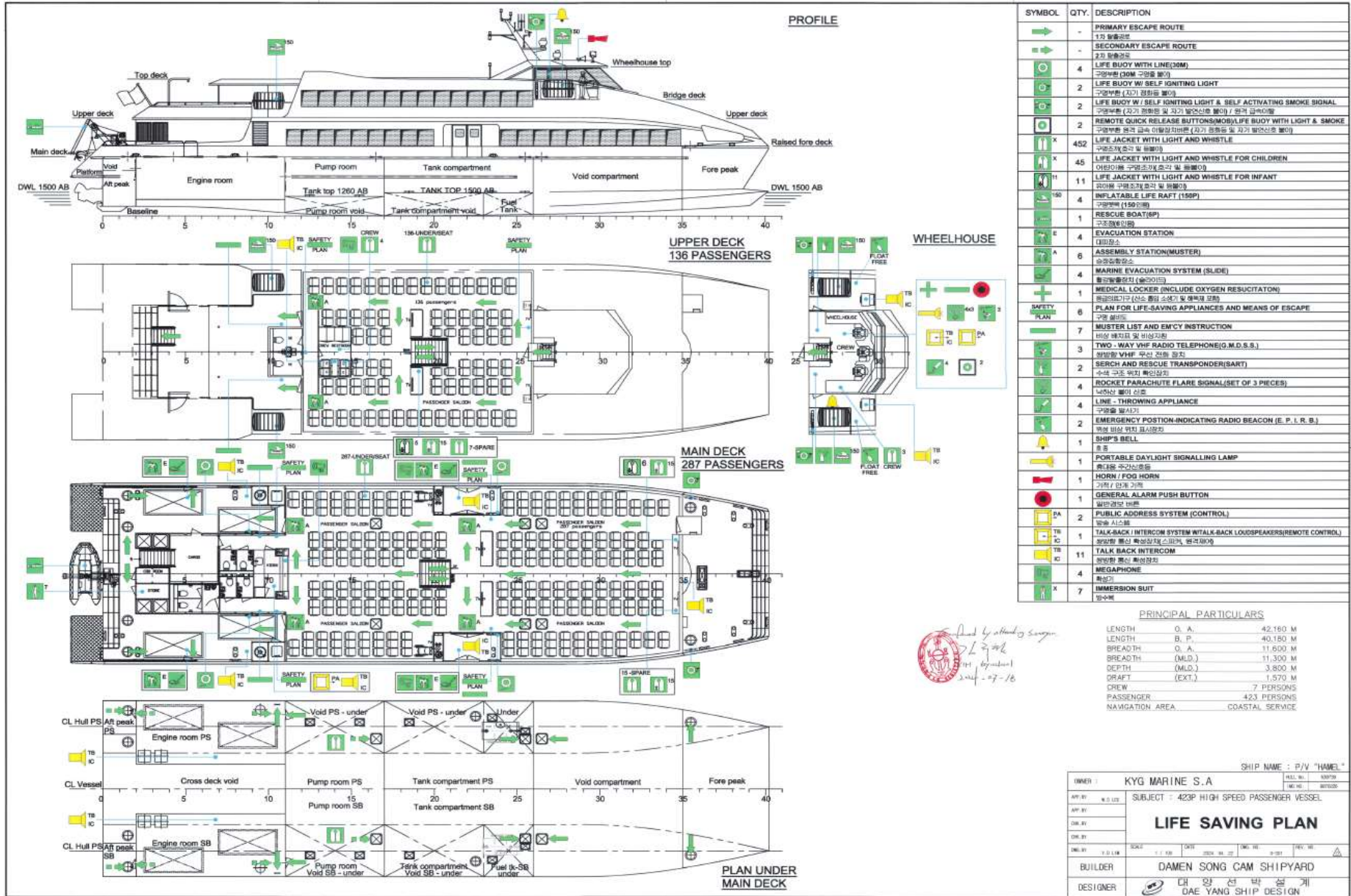
KOREAN REG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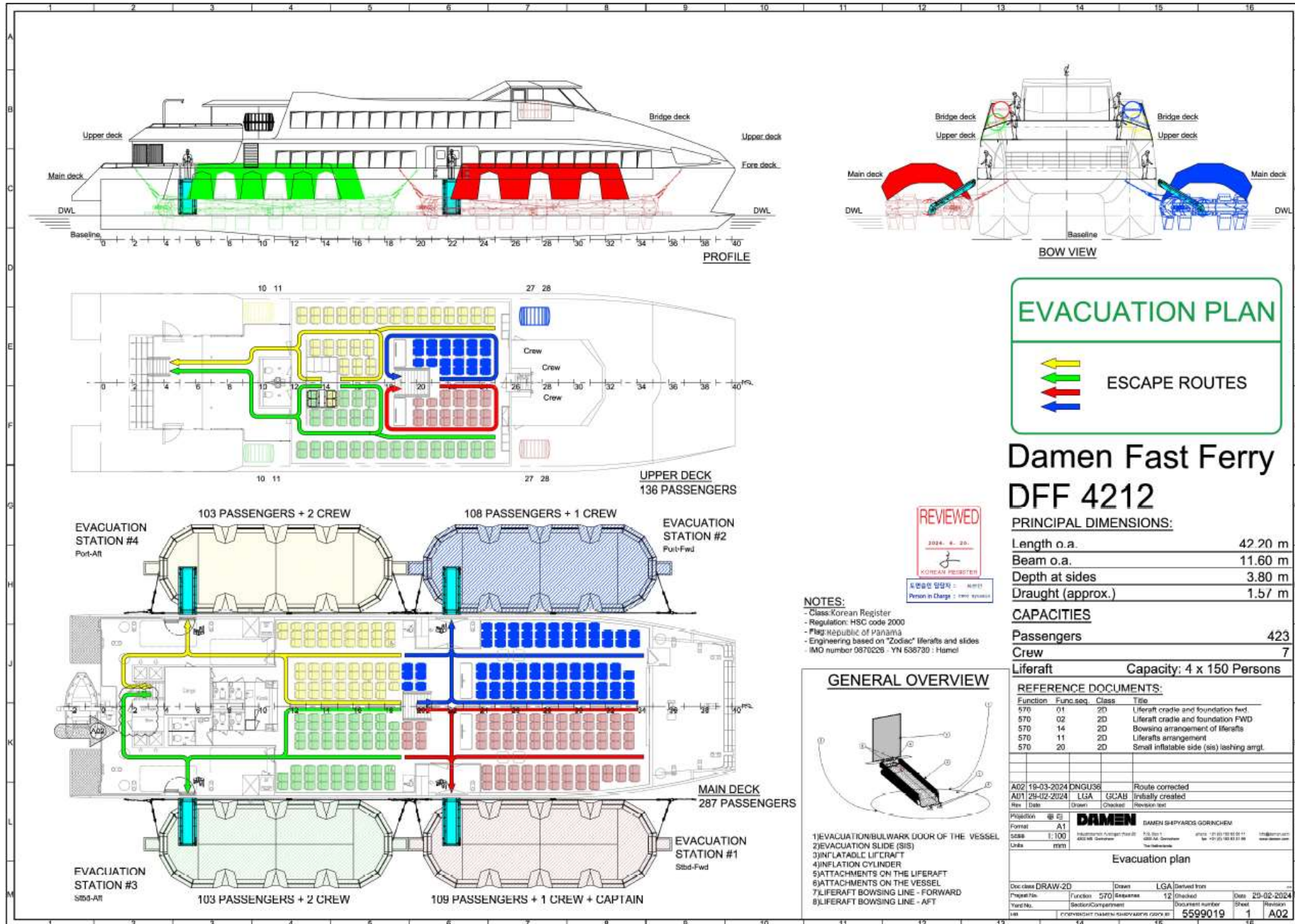
국토해양부장관 : 김민

Person in Charge : 김민

SHIP NAME : P/V "HAMEL"	
OWNER - KYG MARINE S.A.	REG. NO. 42103
DESIGNER	DESIGN NO. 130-041
일반배치도	
BUILDER	DAMEN SONG CAM SHIPYARD
DESIGNER	대양선박설계 DAE YANG SHIP DESIGN

[붙임 3] 인명구조장비





EVACUATION PLAN

ESCAPE ROUTES

Damen Fast Ferry DFF 4212

PRINCIPAL DIMENSIONS:

Length o.a.	42.20 m
Beam o.a.	11.60 m
Depth at sides	3.80 m
Draught (approx.)	1.5/ m

CAPACITIES

Passengers	423
Crew	7
Liferaft	Capacity: 4 x 150 Persons

REFERENCE DOCUMENTS:

Function	Func. seq.	Class	Title
570	01	2D	Liferaft cradle and foundation fwd
570	02	2D	Liferaft cradle and foundation FWD
570	14	2D	Bowsing arrangement of liferafts
570	11	2D	Liferafts arrangement
570	20	2D	Small inflatable side (sis) lashing arngt.

A02	18-03-2024	DINGUS86	Route corrected	
A01	25-02-2024	LGA	Initially created	
Rev	Date	Drawn	Checked	Revision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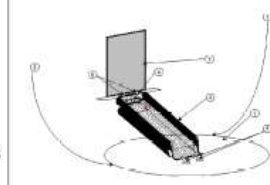
Project No.	A1	Revision	1:100
Scale	mm		
DAMEN DAMEN SHIPYARDS GORINCHEM			
Evacuation plan			

Doc class	DRAW-2D	Draws	LGA	Derived from
Project No.	Function	570	Sequence	12
Yard No.	Section/Compartment	Document number		Date
Date	5599019			1
				A02

NOTES:

- Class: Korean Register
- Regulation: HSC code 2000
- Flag: Republic of Panama
- Engineering based on "Zodiac" liferafts and slides
- IMO number 9870228 - YN 638730 : Ham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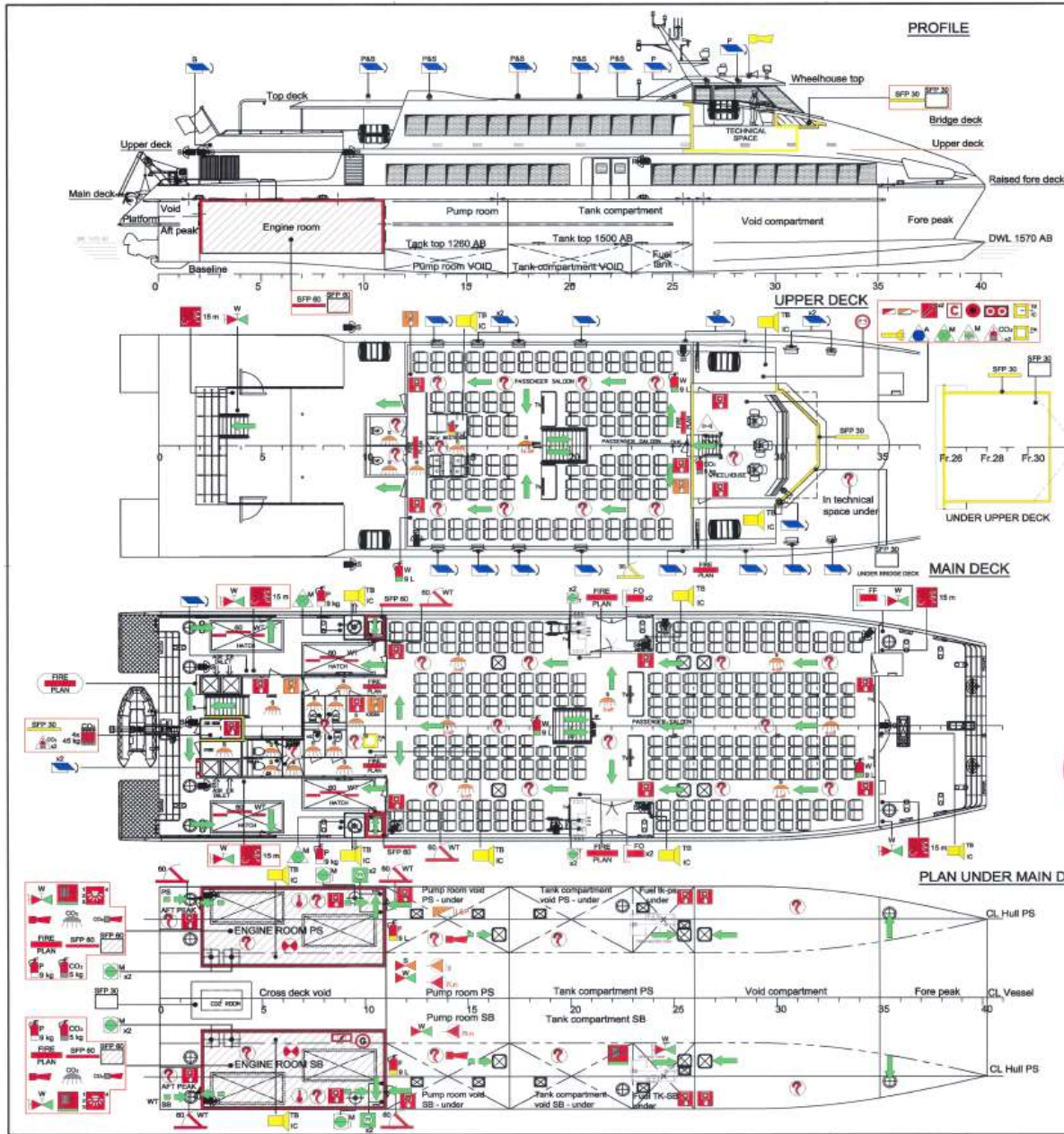
GENERAL OVERVIEW



- 1) EVACUATION/BULWARK DOOR OF THE VESSEL
- 2) EVACUATION SLIDE (SIS)
- 3) INFLATABLE LIFERAFT
- 4) INFLATION CYLINDER
- 5) ATTACHMENTS ON THE LIFERAFT
- 6) ATTACHMENTS ON THE VESSEL
- 7) LIFERAFT BOWSING LINE - FORWARD
- 8) LIFERAFT BOWSING LINE - AFT

[붙임 4] 화재제어도

도형	소화기 종류	계	위치			
			조타실	1층객실	2층객실	기관실
【소화기】						
	탄산가스 소화기(5.0kg)	3	1	-	-	2
	휴대식 포말소화기(9.0L)	3	-	-	1 (선원실)	2 (펌프룸)
	휴대식 분말소화기(9.0kg)	4	-	2 (기관실입구)	-	2
	물 소화기(9.0L)	4	-	2	2	-
【소화장치】						
	소화전	8	1 (우현 Tank Room)	4 (선수, 선미갑판)	1 (선미갑판)	2
	소화호스 릴 (15M소화호스 및 소화노즐)	3				2
	소화호스 상자 (15M소화호스 및 소화노즐)	5		4 (선수, 선미갑판)	1 (선미갑판)	



GENERAL		
SYMBOL	QTY	DESCRIPTION
1	1	EMERGENCY SOURCE OF ELEC. POWER(BATTERY)
2	1	CONTROL STATIONS
3	2	ALARM LIGHT COLUMN(SIGNALS), INTERCOM, ALARM SYST. FIRE DET. GENERAL ALARM, 200 Hz, 200-250 Hz, 200-250 Hz
4	1	EMERGENCY SOURCE OF ELEC. POWER(GENERATOR)
5	1	EMERGENCY SWITCH BOARD
6	1	FIRE CONTROL PLAN
7	1	FIRE CONTROL PLAN IN STORAGE TUBE
8	1	EMERGENCY STOP MAIN ENGINES
9	4	EMERGENCY ESCAPE BREATHING DEVICES(E.B.D.)
10	1	PORTABLE DAYLIGHT SIGNALLING LAMP
11	1	HORN (FOG HORN)
12	1	GENERAL ALARM PUSH BUTTON
13	16	CCTV CAMERA(SURVEILLANCE)
14	2	PUBLIC ADDRESS SYSTEM (CONTROL)
15	1	TALKBACK INTERCOM SYSTEM WITH BACK LOGS(PASSENGER CONTROL)
16	1	TALK BACK INTERCOM

STRUCTURAL FIRE PROTECTION		
SFP 30	-	SFP = 30min CLASS DIVISION - BHD / A-200(187/187)
SFP 60	-	SFP = 60min CLASS DIVISION - BHD / A-200(187/187)
SFP 150	-	SFP = 150min CLASS DIVISION - BHD / A-200(187/187)
FD	-	FD = 60min CLASS DIVISION - UNDER DECK / A-200(187/187)
FD 150	-	FD = 150min CLASS DIVISION - UNDER DECK / A-200(187/187)
FD 30	-	FD = 30min CLASS DIVISION - UNDER DECK / A-200(187/187)
FD 60	-	FD = 60min CLASS DIVISION - UNDER DECK / A-200(187/187)
FD 150	-	FD = 150min CLASS DIVISION - UNDER DECK / A-200(187/187)
W	-	WATER TIGHT
WT	-	WT = 60min CLASS FIRE HATCH / A-200(187/187)
WT 150	-	WT = 150min CLASS FIRE HATCH / A-200(187/187)
WT 30	-	WT = 30min CLASS FIRE HATCH / A-200(187/187)
WT 60	-	WT = 60min CLASS FIRE HATCH / A-200(187/187)
WT 150	-	WT = 150min CLASS FIRE HATCH / A-200(187/187)
ESR	-	PRIMARY ESCAPE ROUTE
ESR 2	-	SECONDARY ESCAPE ROUTE

FIXED FIRE FIGHTING APPLIANCES		
1	2	KEY FOR CO2 LOCKER
2	1	CO2 ALARM HORN
3	2	FIRE MAIN SECTION VALVE
4	1	SPRINKLER SECTION VALVE
5	2	CO2 ALARM ROTATING LIGHT(RED)
6	1	CLOSING DEVICE FOR VENTILATION (ADCOCK SPACE)
7	4	SMOKE DAMPER FOR MACHINERY SPACE

REMOTE CONTROLS		
1	1	REMOTE CONTROL FOR FUEL OIL VALVES
2	1	REMOTE CONTROL FOR FIRE DAMPER(FOR MACH)
3	1	FIRE DAMPER FOR MACHINERY SPACE
4	1	VENTILATOR REMOTE CONTROL OR SHUT-OFF(FOR MACH)
5	1	VENTILATOR REMOTE CONTROL OR SHUT-OFF(FOR MACH)
6	1	2-OFF WHEEL HOUSE
7	1	VENTILATOR REMOTE CONTROL OR SHUT-OFF(FOR ACC.)

FIRE FIGHTING APPLIANCES		
1	1	INTERNATIONAL SHORE CONNECTION(FIRE FIGHTING)
2	1	SHORE CONNECTION(FUEL OIL)
3	3	FIRE HOSE REEL W/ 15M FIRE HOSE & JET/SPRAY NOZZLE
4	3	FIRE HOSE BOX W/ 15M FIRE HOSE & JET/SPRAY NOZZLE
5	1	FIRE HYDRANT
6	3	PORTABLE CO2 FIRE EXTINGUISHER (5KG)
7	3	PORTABLE FOAM FIRE EXTINGUISHER (5L)
8	4	PORTABLE DRY POWDER FIRE EXTINGUISHER (5.5KG)
9	4	PORTABLE WATER FIRE EXTINGUISHER (5L)
10	1	FIXED CO2 EXTINGUISHING BATTERY

FIRE DETECTION & ALARMS		
1	1	CONTROL PANEL FOR 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
2	24	MANUALLY OPERATED CALL POINT
3	4	SPACE MONITORED BY SMOKE DETECTOR
4	2	SPACE MONITORED BY HEAT DETECTOR
5	2	FIRE PUMP GENERAL SERVICE PUMP(200kW @ 4.75bar)
6	4	GENERAL ALARM / FIRE ALARM SIREN
7	1	SPRINKLER PUMP (150kW @ 3.75bar)
8	1	REMOTE INDICATION PANEL FOR SPRINKLER PUMP
9	1	LOCAL STARTER PANEL FOR SPRINKLER PUMP
10	4	MANUALLY OPERATED CALL POINT (SPRINKLER SYSTEM)
11	54	SPACE PROTECTED BY SPRINKLER
12	2	SPACE PROTECTED BY CO2

PRINCIPAL PARTICULARS	
LENGTH (O. A.)	42.165 M
LENGTH (B. P.)	40.180 M
BREADTH (O. A.)	11.600 M
BREADTH (M.L.D.)	11.300 M
DEPTH (M.L.D.)	3.800 M
DRAFT (EXT.)	1.570 M
CREW	7 PERSONS
PASSENGER	423 PERSONS
NAVIGATION AREA	COASTAL SERVICE

Confirmed by attending surveyor
 2024-07-18

SHIP NAME : P/V 'HAMEL'	
OWNER :	KYG MARINE S.A
DESIGNER :	DAE YANG SHIP DESIGN
FIRE CONTROL PLAN	
SUBJECT : 423P HIGH SPEED PASSENGER VESSEL	
BUILDER :	DAE YANG SHIP DESIGN
DESIGNER :	DAE YANG SHIP DESIGN

[붙임 5] 선원법정교육 목록

교육명	구분 및 교육기간	유효기간	관련법령
기초안전교육	4.5일/재교육 2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안전교육	구명정(재) / 3(0.5)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소화(재) / 3(1)일	5년	
	응급처치(재) / 3(0.5)일	5년	
	고속구조정 / 1일	5년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5년	
해양오염방지 관리인교육	정규 / 3일	5년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재·보충 / 2일	5년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시뮬레이션 / 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레이더 / 2일	없음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리더십 및 관리기술직무 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여객선교육	기초(재) / 2(1)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재) / 4(2)일	5년	
여객선 직무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의료관리자 교육	자격취득교육 / 5일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보수교육 / 2일	5년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기사반 / 5일	없음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없음	
면허갱신교육	3급 이상 / 3일	5년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급 이하 / 2일	5년	
	통신 / 1일	5년	
당직부원교육	항해당직부원/5일 자동화선박 운항당직/1월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면허전환교육	3급 해기사/ 5일 4급 또는 5급 /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붙임 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1항 [별표 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관련

분류	위험물	수량 및 질량
화약류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200개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400개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1kg
	도화선	3kg
고압가스	소화기, 약품류	2개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10kg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설치 및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휴대한 고압가스	
	- 압축질소(UN1066)	10.2리터
	- 압축산소(UN1072)	6.2리터
	- LPG(UN1011/1075)	1.5kg
	- 인화성 냉매	10kg
- 비인화성 -비독성 냉매	40kg	
부식성 물질	축전지	2개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3kg
독물류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3kg
인화성 액체류	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3kg
	도료, 가솔린, 등유	20kg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10kg
산화성 물질류	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3kg
가연성 물질류	셀룰로이드	1kg
	안전성냥, 약품류	3kg
	카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5kg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복된 것)	20kg
유해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5kg
<p>※ 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물별 수량 및 질량/용량은 1인당 또는 차량 1대당 휴대·반입할 수 있는 최대량을 말한다. 2. 고압가스 용기의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받은 것으로 공급 밸브가 잠겨 있어야 하고,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 용기는 밸브 보호 마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3.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및 수리용 가스류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량(kg)의 경우 가스 내용물의 순질량 기준이며, 용량(리터)의 경우 수(水)용량 기준임 - LPG, 산소, 질소 용기의 경우 각 1개 이하일 것 - 인화성 냉매의 경우 질량 5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비인화성-비독성 냉매의 경우 질량 20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용접용 LPG 및 산소의 경우 연결배관(호스)이 분리되어 있을 것 - 차량 한 대 또는 한 사람 당 휴대할 수 있는 용기는 총 6개 이하일 것. 다만, 250g 이하의 냉매가스를 함유한 소형용기(gas cartridge)의 경우 합계 질량 1kg 이하로 추가하여 휴대 가능 - 인화성가스 용기와 산소 용기의 배출밸브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도록 적재할 것 		

[붙임 7]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검용 여객선)							1/2	
년 월 일 시 분							출항	
선 명				선박번호				
항로 및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		시간 분		
흘 수	선수(船首): m, 중앙: m, 선미(船尾): m							
최대 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	명	여객	명	선원	명	임시 승선자	명	
실제 승선인원	(①+②+③+④+⑤)명	여객	(①+②+③)명	선원	④명	임시 승선자	⑤명	
			대인 ①명 소인 ②명 유아 ③명					
화물의 적재한도 (운항관리규정)	M/T							
실제화물 적재중량 (화물집계표)	(a+b+c) M/T			-차량화물- 대 -a- M/T				
				일반화물		b M/T		
				-컨테이너- 개 -c- M/T				
위험화물 [차량 및 수하물(手荷物)]	위 치	종 류		수 량	보관형태	특징/비고		
	지정장소 (선수창고 등)							
	화물창							

* 일반카페리선박에 한해 G₀M 등 복원성계산서를 첨부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2/2

선 명	선박번호	점검결과		비 고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1. 선장·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가.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 운항관리규정상 법정승무원의 승선을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라. 선교 항해·통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레이더 <input type="checkbox"/> 컴퍼스 <input type="checkbox"/> GPS <input type="checkbox"/> AIS <input type="checkbox"/> 음향측심기 <input type="checkbox"/> 항해등 <input type="checkbox"/> 조타기 <input type="checkbox"/> 선내 방송설비 <input type="checkbox"/> VHF <input type="checkbox"/> 기적 <input type="checkbox"/> e-Nav 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전자해도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설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마. 주기 및 발전기, 그 밖의 기기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운전상태 또는 사용 준비 상태 확인 - 연료유공급탱크 채움 등 필요한 연료유 확보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바. 기관실 내 위험요소는 제거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이동물 고정 <input type="checkbox"/> 인화·발화물질의 이동보관, 격리, 제거 <input type="checkbox"/> 누수·누유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 선내 소화·구명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구명조끼, 소화기 등은 표본 점검 가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 통로 장애물 유무 확인 등 비상탈출로는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 선체상태, 만재흡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평형수 적재 가능한 일반카페리의 경우 복원성(GoM 등) 추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차. 화물구역의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카. 선내 위험물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타. 여객명부 및 화물목록을 본선에 수령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파. 선원이 알코올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자에 한정하여 육안점검 등 시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선장·기관장				
가. 갑판설비 등은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선설비 <input type="checkbox"/> 양묘(揚錨)설비 <input type="checkbox"/> 스러스터(Thruster)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설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 선박추진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 타기실 내 누수·누유 여부 및 빌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라. 여객실 등 여객구역에 구명조끼 등 비품이 비치되어 있고 청결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마. 승무원이 각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바. 육상 작업원 등 방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결합사항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선 장				(인)
선장 등과 위 내용을 점검 및 확인합니다.				
운항관리자				(인)

주: 점검 후 결과란 “예”, “아니오” 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표시한다.

년 PMS CHECK LIST

M/V HAMEL

DEPT. DECK

작성	
검토	
승인	

년 PMS CHECK LIST

M/V HAMEL

DEPT. ENGINE

작성	
검토	
승인	

[붙임 9] 비상부서 배치표

SEE LETTER



비 상 배 치 표
(MUSTER LIST)

M/V HAMEL
(승무원 7인 승선)

비상번호 : ■■■■■■ ■■■■■■ ■■■■■■ ■■■■■■ ■■■■■■ (장음 5회)
퇴 선 : ■ ■ ■ ■ ■ ■ ■■■■■■ (단음7회, 장음1회)

종류	소화배치 (일부 및 휴대용)	퇴선배치 (일부)	배치번호 휴대용	비상조바 (일부 및 휴대용)	수색인명구조 (일부 및 휴대용)	오염방제 (일부 및 휴대용)	주기관 사고 (일부 및 휴대용)	승문/방수대용 (일부 및 휴대용)	과초사고 (일부 및 휴대용)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출입 (일부 및 휴대용)	타원후 대응 (일부 및 휴대용)
선 장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의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의업무 최종 관류자 확인	구조경 2WAY VHF 중요서류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의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의업무 2WAY VHF 휴대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의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의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의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의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의업무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의업무
항해사A	현장지휘 선교에 상황 보고	객실 여객우도 구조경 확장 지원	NO 02 2WAY VHF SART	선미, EAMEWA확인 선교와 연락	현장지휘, 구조경계장 2WAY VHF 휴대	현 장, 방제 작업	선수, 선교 연락 부조작일 준비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안전물류대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현장지휘 선교와 연락	객실지휘 객실안내방송 여객 안전 순찰
항해사B	객실 여객안내 및 선내방송	객실 객실안내방송 여객우도	NO 03 2WAY VHF EPIRB	객실 선교와 통신업무 여객안내	객실 선교와 통신업무 여객안내 구급약품	현장 방제작업 구급약품	통신업무, 여객안내 구급약품	통신업무, 여객안내 구급약품	통신업무, 여객안내 구급약품	통신업무, 여객안내 구급약품	객실 통신업무, 선장 보좌 및 전시
기관장	선교, 선장보좌, 총통, 유류와단, 소화 기기 작동	선교, 객실 선장보좌, 구명뗏목 부하 여객우도	NO 04 중요서류 낙하산서류	선교 선장보좌 BACK-UP SYS. 조바	선교 선장보좌 기관 조바	현장 총지휘 방제 작업 순환, 선교와 연락	선교 / 기관실 기관실 지휘	선교 기관실 지휘	선교 기관실 지휘	선교 기관실 지휘	선교 기관 조바
기관사A	현 장 총통, 유류와단확인	객실, 구조경 2층객실 여객우도 여객구조 및 구명뗏목이안	구조경 SART 방수복	후현기관실 EAMEWA SYS. 확인 트랙백 교신	감 판 구조경장하준미 구명부한, 워닝다인	현 장 방제작업, 과충기조바 안전물, 유저디제	기관실	기관실 연료측실	기관장지시 최거 업무수행	기관장지시 최거 업무수행	객실 여객 안전 순찰 및 기관장지시 최거 업무 수행
기관사B	현장 소화전 조작	객실 여객우도	NO 01 모토, EPIRB	후현기관실 EAMEWA SYS. 확인 트랙백 교신	현 장 구조경 요원 방수복 휴대	현장 방제작업 총작로, 권력	기관실	현장 항해사A 보좌 제기, 방치휴대	현장 항해사A 보좌 제기, 방치휴대	현장 항해사A 보좌 안전물, 구명물	객실 여객 안전 순찰
항해사C (감판장)	현 장 소화작업 안전물	객실 1층객실 여객우도	NO 02 모토 구급약품	객실 여객필서유지	객실 여객안내	현장 방제작업 쓰레말이, 쓰레기통	선수 부조작일 준비 여객안내	현장 항해사A 보좌 과목, 모토, 데트휴대	현장 항해사A 보좌 과목, 모토, 데트휴대	현장 항해사A 보좌 안전물	객실 여객 안전 순찰

- ※ 총원퇴선의 명령을 선장이 『총원퇴선, 퇴선부서배치』 방송후, 『구명뗏목투하시작』 구령으로 한다.
- ※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정비점검자 : 항해사A, 기관사 A
- ※ 비상 상황 발생시 전승무원은 무전기 휴대한다.

구명뗏목 배치	성 장	구명뗏목번호	객실(좌석)배치	소집장소	구명뗏목 배치	성 장	구명뗏목번호	객실(좌석)배치	소집장소
기관사A	선 장	NO 01	1층 가.나열, 2층 B열	1번 비상탈출구	항해사B	항해사B	NO 03	1층 마.바열, 2층 AE열	3번 비상탈출구
항해사A	항해사A	NO 02	1층 다.라열, 2층 C열	2번 비상탈출구	기관장	기관장	NO 04	1층 사.아열, 2층 FD열	4번 비상탈출구

- ※ 부서배치시에는 긴바지, 장갑,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휴대품을 지참한다. (퇴선시는 착용복장 그대로 배치한다.)
- ※ 업무대행 : 선장 ⇒ 항해사A, 기관장 ⇒ 기관사A, 항해사A ⇒ 항해사 B, 기관사A ⇒ 기관장
- ※ 승무원은 각자 배치 받은 구명뗏목의 투하를 확인하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위치에서 여객을 유도한다.
- ※ 여객우도시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선 장 : _____

[붙임 10]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구분		주기	대상자	
선내숙지훈련		수시	모든 선원	
해상인명 안전훈련	소화훈련	10일	모든 선원	
	퇴선훈련	10일	모든 선원	
	단정훈련	구명정 강하	3개월	모든 선원
		진수훈련	1년	모든 선원
해난사고 대응훈련	선체손상 대처훈련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 대비 등)		3개월	모든 선원
	인명사고시 행동요령	해상추락	6개월	모든 선원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2개월	모든 선원
	비상조타훈련		3개월	모든 선원
기름유출 대처훈련		매월	모든 선원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구분	비상상황 유형	보 고 기 준
1.	소화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써,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어 불가능한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퇴선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하여야 할 경우
3.	비상조타	선박 조타기의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본선의 위험여부, 본선자체수리여부, 타선 박 운항 상 지장이 없는 지를 종합 판단하여 대처한다.
4.	인명구조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 사항 포함
5.	기름유출대처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의 확산 방지 및 유출된 기름의 수거
6.	충돌·좌초 및 전복	충돌로 인한 파손 부위의 확인 및 침수 방지와 전복으로 인한 비상대응 훈련
7.	추진기관 고장	신속한 보고와 효과적인 선조취를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비상투묘
※ 통신유지 사항		SSB,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선박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 ◎ 시나리오 1-1 : 소화 및 퇴선훈련(기관실 화재)
- ◎ 시나리오 2 : 비상조타훈련
- ◎ 시나리오 3 : 수색인명구조훈련
- ◎ 시나리오 4 : 좌초 및 오염방제훈련
- ◎ 시나리오 5 : 주기관사고 및 비상예인 훈련
- ◎ 시나리오 6 : 충돌사고 및 방수대응 훈련
- ◎ 시나리오 7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 시나리오 1 : 소화 및 퇴선훈련(기관실 화재)

상황진행 : 20_ _년 _ _월 _ _일 여객 400명, 승무원 7명 승선후 0900시여수 여객선터미널을 출항하여 거문항으로 항해하던 중 까막섬 부근 해상에서 좌현펌프룸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소화, 퇴선 훈련 실시

항해 중 MASTER ALARM 경보되며 좌현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판넬등이 들어옴

기 관 장 : 좌현 기관실 화재감지, 모니터 확인 결과 B급 유류화재로 판단 됩니다.(CCTV 확인)

선 장 : 기관실 화재발생 확인, 항해사 비상신호 발령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할 것. 트랜시버사용/ 좌현기관실 B급 유류화재 발생.

전 선원 소화 배치불어, 소화 배치불어(채널 00번 2회반복)

전 선 원 : 소화 배치불어(3회 복창)

항해사B : 화재비상신호 발령, 비상소화신호 발령 장음5회

기 관 장 : 엔진정지 및 통풍차단

선 장 : 엔진정지 및 통풍차단 확인

상 황 : 트랜시버 사용하여 각 선원 현재위치 및 상황인지 상태 확인(채널 00번)

선 장 : 각 승무원 위치보고 바람

기관사B : 기관사B, 현재 위치 데크, 좌현기관실 화재 양지했습니다.

항해사A : 항해사A, 현재 위치 선수 데크, 좌현기관실 화재 양지했습니다.

기관사A : 기관사A, 현재 위치 객실, 좌현기관실 화재 양지했습니다.

갑 관 장 : 갑관장, 현재 위치, 객실, 좌현기관실 화재 양지했습니다.

선 장 : 총 7명 현재 위치 확인, 각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람

갑관장과 기관사B는 여객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하기 바람

갑 관 장 : 네 알겠습니다.

상 황 : 위치는 기관사B는 앞쪽의 여객 구명조끼 착용을 돕고, 갑관장은 뒤쪽의 여객 구명조끼 착용을 돕는다. 추가 승선시 뒷쪽에 우선 배치되어 여객 안내를 돕는다. 이때 여객 중 안전 도우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 한다.

선 장 : 안내방송/ 승객 여러분 HAMEL호 선장입니다. 현재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숙련된 승무원들에 의해 자체 화재진압 중에 있습니다. 승객여러분은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의자밑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P보고/ 현재 까막섬 부근 해상 좌현기관실 B급 유류화재 발생하여 고정식 CO2 작동하여 진압 예정입니다. 관계청 보고 및 비상상황 지원바랍니다.

항해사B : 운항관리센터, 현재 까막섬 부근 해상 B급 유류화재 발생하여 고정식 CO2 작동하여 진압 예정입니다. 승객 400명중 유아 0명, 어린이 5명, 성인 395명 / 승무원 7명 호출부호 0000 이상입니다.

기관사B(갑관장) : 여객안내 / 현재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본선 선원들이 진화작업에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본인 좌석 하단에 있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좌석앞에 비치되어 있는 안전카드의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착석하여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상 황 : 기관장은 현장 소화반 항해사A와 교신 한다. 교신채널은 CH00로 이용하여 기관장과 항해사A 교신하며, 현장반 기관사A는 비상채널 NO.00을 청취하며 변동사항을 항해사A에게 보고한다.

기 관 장 : 항해사A, 기관실 진입하지 말고 현장 화재상황 보고 바람

항해사A : 브릿지, 현장도착, 입구문 확인결과 열기가 느껴집니다.

기 관 장 : 현장 입구문 열기 확인

현장 양지 CO2 방출 하겠음.

선장님 CO2 방출 하겠습니다.

선 장 : CO2 방출 양지하였음.

기 관 장 : 현장 현재 CO2 방출하였음. 소화호스 준비상태 보고 바람.

항해사A : 브릿지, 소화호스 설치 완료, 소화펌프 작동 바랍니다.

기 관 장 : 현장 양지, 소화펌프 작동 완료

항해사A : 브릿지, 현장 소화펌프 정상 작동, 좌현 기관실 화재 부근 출입문 냉각 작업 임하겠습니다.

기 관 장 : 현장 양지, 무리한 접근은 하지 말고 냉각작업에 임할 것(CCTV로 기관실 모니터링)

선 장 : 객실 상황 보고 바람

기관사B : 브릿지, 뒤쪽 승객 구명조끼 착용 후 좌석에서 대기중입니다.

갑 관 장 : 브릿지, 앞쪽 승객 구명조끼 착용 후 좌석에서 대기중입니다.

선 장 : 양지, 계속해서 승객들 안내바람

승객 여러분 본선 선장입니다. 현재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고정식 소화설비를 작동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현재 위치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또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만약을 대비해 의자 밑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DP 보고/ 현재 CO2 방출 하였으며, 승객 구명조끼 착용 후 동요하지 않고 좌석에 착석하여 대기중이며 안심하도록 안내유도 중입니다. 승객 400명중 유아 0명, 어린이 5명, 성인 395명 / 승무원 7명입니다.

항해사B : 운항관리센터, 현재 HAMEL호 고정식 CO2 작동 후 진화 대기중이며 화재부근 출입문 소화펌프 작동 냉각살수 중입니다.

승객 구명조끼 착용 후 동요하지 않고 좌석에 착석하여 침착하게 대기중이며 안심하도록 안내유도 중입니다. 호출부호 0000 이상입니다.(CCTV로 객실 모니터링)

상 황 : 운항관리센터로부터 해경 및 해군출동 사실 확인 통보 받음.

선장은 총지휘 및 안내방송을 담당 항해사B 는 외부와의 교신을 담당한다.

기 관 장 : 현장반, 상황보고 바람

항해사A : 브릿지/ 현장 냉각작업에 하고 있으며 화재 부근 출입문 온도는 이전보다 조금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기 관 장 : 현장반, 기관실 불길이 여전히 감지되고 있으니 CO2 수동 방출 바람

항해사A : 브릿지, CO2 수동 방출 후 보고 하겠습니다.

선 장 : 객실 여객 상황 및 환자 파악 바람

기관사B : 브릿지, 뒤쪽 여객 구명조끼 전원착용 완료. 환자 없습니다.

갑 관 장 : 브릿지, 앞쪽 여객 구명조끼 전원착용 완료. 환자 없습니다.

선 장 : 양지, 전 여객 동요치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 바람

항해사A : 브릿지, CO2 수동 방출 하였습니다.

기 관 장 : 현장반, 양지 지속적인 냉각작업 임하기 바람.

선 장 : 안내방송/ 승객 여러분 HAMEL호 선장입니다.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설비를 작동 하였으며 숙련된 승무원들이 진압 작업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 여객선터미널로 부터 약 6Km 위치해 있으며 여수 운항관리센터에 연락하여 여러분 안전을 위하여 해경 및 해군이 긴급 출동하였습니다. 약 15분 후 도착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HAMEL호 선장이하 전 승무원은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을 안전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관 장 : 선장님 CO2 방출 후 10분이 지났으나 여전히 CCTV로 불길이 감지 되고. 더 이상 화재진압 불가로 판단 됩니다.(본선 CO2 방출시간 2분)

선 장 : 항해사B 해경 및 관계기관 연락바람
D.P 보고 / 현재 CO2 방출 완료 하였으나 진압에 실패하여 현 시간 퇴선을 결정하였습니다. 비상시에 따른 지원 부탁드립니다.(상황 확인 후 퇴선 결정)

항해사B :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및 관계기관 연락 하겠습니다.

상 황 : 화재 진압 실패하여 퇴선 결정

선 장 : 트랜시버 사용/ 현재 화재진압 실패하여 본선 퇴선 결정, 전 승무원 퇴선 배치붙어, 퇴선 배치붙어(전 선원 브릿지 집합 후 개인 지참물 지참하여 퇴선 실시)

전 선 원 : 퇴선 배치붙어(3회 복창)

선 장 : 항해사B, 퇴선신호 발령 및 비상등 점등하기 바람

항해사B : 네 알겠습니다. 퇴선신호 및 비상등 점등 완료 하였습니다.

항해사B : 운항관리센터, HAMEL호 화재진압 실패하여 09시 30분 퇴선 합니다. 승객 400명중 유아 0명, 어린이 5명, 성인 395명, 승무원 7명, 총원 407명 퇴선합니다. 현재위치는 북위 34도 41분 동경 127도 41분이며 해상상태는 양호합니다. 해경도착 예정시간 알려 주십시오.

선 장 : 기관장 구멍땀목 투하 상태보고 바람(구멍땀목 투하 버튼 작동)

기관사A : 기관장님 구멍땀목 4벌 전부 투하 되었습니다.(본인 개인별 임무 담당)

항해사B : 선장님 약 30분 후 해경 및 해군도착 예정입니다.

선 장 : 30분 후 해경 및 해군 도착 예정 양지

승무원 현재 위치 보고 바람

기관사A : 기관사A, 현재위치 우현 선수 여객 안내 및 퇴선준비중

기관장 : 기관장, 현재위치 좌현 선미 여객 안내 및 퇴선준비중

항해사A : 항해사A, 현재위치 좌현 선수 여객 안내 및 퇴선준비중

항해사B : 항해사B, 현재위치 우현 선미 여객 안내 및 퇴선준비중

갑 관 장 : 갑판장, 현재위치 객실구역 내 잔류 여객안내 및 퇴선준비중

선 장 : 현재 승무원 위치 확인, 전 승무원 현재 해경 및 해군이 약 30분 후 도착예정이며, 여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퇴선 결정하였음. 각자 비상배치표에 따라 여객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MES(승정용 사다리설치) 완료 후, 지참물 지참 하시어 각자의 위치로 가서 승객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안내방송/ 승객여러분 HAMEL호선장입니다. 기관실 화재발생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퇴선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HAMEL호는 여수 운항관리센터와 연락하여 해경 및 해군이 약 30분 후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구명뗏목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판 장 : 여객안내 / 기관실 화재발생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뗏목 설치가 완료 되면 퇴선 하겠습니다. 설치완료 되면 안내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 환자, 여성, 남성 순으로 천천히 이동하여 구명뗏목에 탑승하여 주시고 구명조끼 착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제거하시고 뽀족한 구두도 벗어 주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탑승 공간 및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 천천히 탑승하여 주십시오. 또한 좌석앞에 비치된 안전카드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착석하여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선장 방송종료 후 필요시 확성기 이용, 선내 안전영상 계속 방영)

선 장 : 각 구명뗏목 위치 및 슬라이드 설치 상태 보고 바람

항해사A : No.2 구명뗏목 위치 및 슬라이드 설치 완료

기 관 장 : No.4 구명뗏목 위치 및 슬라이드 설치 완료

항해사B : No.3 구명뗏목 위치 및 슬라이드 설치 완료

기관사A : No.1 구명뗏목 위치 및 슬라이드 설치 완료

선 장 : 슬라이드 설치 완료 확인, 전선원 퇴선실시! 퇴선실시!

전 선 원 : 퇴선(3회 복창)

상 황 : 각 정장은 비상구 근처 여객안전 도우미에게 구명뗏목 탑승 후 승객 탑승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

기관사B : 앞쪽 여객안내/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구명뗏목에 탑승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환자, 여성, 남성 순으로 천천히 뒤쪽 좌·우편 문으로 나가 주십시오. 구명조끼 착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수화물은 지참하지 마시고 뒤쪽으로 천천히 나가 주십시오.

갑 판 장 : 뒷쪽 여객안내/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구명뗏목에 탑승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환자, 여성, 남성 순으로 천천히 중앙 좌·우편 문으로 나가 주십시오. 구명조끼 착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수화물은 지참하지 마시고 중간 양쪽문으로 천천히 나가 주십시오.

선 장 : 전 선원 현재 상황 보고

갑 판 장 : 여객 구명조끼 착용 확인하고 탑승 안내 중, 환자는 없습니다.

항해사A : 브릿지, 2번 구명뗏목 약 60% 승객 탑승 중입니다.

기 관 장 : 브릿지, 4번 구명뗏목 약 70% 승객 탑승 중입니다.

항해사B : 브릿지, 3번 구명뗏목 약 80% 승객 탑승 중입니다.

기관사A : 브릿지, 1번 구명뗏목 약 80% 승객 탑승 중입니다.

선 장 : 현재 탑승 중 양지, 승객 탑승 완료 시 인원 보고 바람

안내방송/ 승객여러분 HAMEL호 선장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구명뗏목에 천천히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해사A : 브릿지 / 2번 구명뗏목 인원보고 여객 70명 승무원 1명, 총원 71명 탑승완료 하였습니다

니다

기관장 : 브릿지 / 4번 구명뗏목 인원보고 여객 130명 승무원 2명, 총원 132명 탑승완료 하였습니다.

항해사B : 브릿지 / 3번 구명뗏목 인원보고 여객 130명 승무원 2명, 총원 132명 탑승완료 하였습니다.

기관사A : 브릿지 / 1번 구명뗏목 인원보고 여객 70명 승무원 1명, 총원 71명 탑승완료 하였습니다.

선장 : 모두 양지, 현재 승객 400명 및 승무원 6명 탑승 확인 완료, 잔류 인원 확인 후 1번 구명뗏목 탑승 하겠습니다.

선내 잔류 인원 없음.

전 구명뗏목 선박과의 이탈 줄을 절단하여 이탈한다.

전선원 : 이탈(3회 복창)

항해사A : 여수 운항관리센터, "HAMEL호 현시각 퇴선 완료 하였습니다. 승객 400명 중 유아 0명, 어린이 5명, 성인 395명, 승무원 7명, 총원 407명 구명뗏목 4벌에 분산하여 탑승 하였습니다. 해상상태는 양호하고 환자는 없습니다. 해경도착 시간 알려주십시오.

선장님, 해경 약 1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선장 : 트랜시버 사용/ 현재 해경정 도착 약 10분후 이며 되도록 각 구명뗏목은 붙어있고 여객안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종료

■ 시나리오 2 : 비상조타훈련

상황진행 : 20_ _년 _ _월 _ _일 여객 400명, 승무원 7명 승선후 0900시 여수 여객선 터미널을 출항하여 거문도로 향해하던 중 초도 부근에서 원인미상의 조타기 고장을 가정, 비상조타 훈련 실시
향해 중 WATERJET SYSTEM FAULT 발생했다는 ALARM등이 들어옴

기관장 : 좌·우현 WATERJET SYSTEM 고장감지, 자동조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선장 : 조타기 고장확인, 항해사 비상신호 발령 및 여수 운항관리센터 보고
트랜시버사용/ 조타기 고장 발생. 전 선원 비상조타 배치불어, 비상조타 배치불어(채널 00번 2회반복)

전선원 : 비상조타 배치불어(3회 복창)

항해사B : 비상조타 신호 발령(비상조타 신호 - 장음 5회)

선장 : 항해사B는 RADAR 및 육안으로 본선 주변상황 확인 및 주변 선박에게 경고신호 울리고 조종제한선 신호(구-능-구 형상물)표시 할 것.

항해사B : 선장님, 조종불능 신호표시 및 관계기관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상황 : 트랜시버 사용하여 각 선원 현재 위치 및 상황인지 상태 확인(트랜시버 채널 00번)

선장 : 각 승무원 브릿지 집합 바람

전선원 : 브릿지 집합 완료

선장 : 총 7명 각자 비생배치 위치로 이동 바람, 각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람.
좌·우현 WATERJET실 도착하는대로 우현 000° 로 조타할 것

기관사A : 우현 WATER JET실 도착완료. 우현 000°

기관사B : 좌현 WATER JET실 도착완료. 우현 000°

항해사B : 안내방송/ 선내 안내방송 실시 하겠습니다. 선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은 조타장치 이상으로 비상조타로 감속 운항 중에 있으며 다른 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승객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저희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사A : 우현 WATERJET실 우현 000° 잡았습니다.

기관사B : 좌현 WATERJET실 우현 000° 잡았습니다.

항해사A : 선교-현장, 좌·우현 WATERJET 우현 000° 정침 하였습니다.

선장 : 좌·우현 WATER JET실 좌현 000° 항해사A 비상투묘 준비하라.

기관장 : 좌·우현 WATER JET실 좌현 000°

기관사A : 우현 WATERJET실 좌현 000°

기관사B : 좌현 WATERJET실 좌현 000°

항해사A : 선수 투묘요원 배치하겠습니다.

갑판장 : 갑판장 선수로 이동하겠습니다.

기관사A : 우현 WATERJET실 좌현 000° 잡았습니다.

기관사B : 좌현 WATERJET실 좌현 000° 잡았습니다.

항해사A : 브릿지, 선수 투묘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선장 : 선수 양지, 준비되는 대로 LET GO ANCHOR!!

항해사A : LET Go ANCHOR!

현재 투묘 하였으며 ANCHOR CHAIN 방향 00시방향, 장력 생기는 대로 더 놓겠습니다.

기 관 장 : 조타장치 점검결과 예비품 부족으로 본선 수리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사A : 현재 투묘 완료하였으며 CHAIN 방향은 00시 방향, 이상없습니다.

선 장 : 승객 여러분 본선 선장입니다. 현재 조타기의 일시적인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한 곳에 비상투묘 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현재 위치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항해사B는 여수 운항관리센터에 투묘위치 및 현재상황 보고할 것. (선장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예인선 및 예비품 공급을 요청한다.)

항해사B : 운항관리센터, 현재 HAMEL호 조타기 고장으로 인해 현위치 안전한 곳에 비상 투묘 완료 하였습니다. 승객들은 동요하지 않고 본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좌석에 착석하여 침착하게 대기중이며 안심하도록 안내유도 중입니다. 호출부호 0000 이상입니다.

상황종료

■ 시나리오 3 : 수색인명구조훈련

상황진행 : 20_ _년 _ _월 _ _일 여객 400명, 승무원 7명 승선후 0900시 여수 여객선터미널을 출항하여 거문항으로 항해하던 중 초도부근 해상에서 항해 중 해중 익수자를 순찰 중이던 갑판장이 발견하여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수색인명구조 훈련 실시
선미 순찰중이던 갑판장은 우현 선미 해중 익수자를 발견하고 즉시 '사람이 물에 빠졌다!' 하고 큰소리로 외친 후 인근에 있던 구명부환 및 자기점화등을 투하함과 동시에 선교에 알리고 익수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경계한다.

갑 판 장 : 브릿지, 선장님, 우현 선미 순찰 중 거리 약 100m 3시 방향에 익수자 발견하였습니다.

선 장 : 양지. 우현선미 익수자 발생. 전선원 수색인명구조요원 배치하라.

전 선 원 : 수색인명구조 배치불어(3회 복창)

항해사B : 수색인명구조(수색인명구조 신호발령- 장음 5회)

선 장 : 항해사B는 현재 위치 및 기상 시간을 기록하고 여수 운항관리센터 및 해경에 보고할 것.

항해사B : 여수 운항관리센터, 여기는 HAMEL호입니다. 긴급상황입니다.

본선에서 약 100미터 거리에서 익수자 발견하여 현재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간은 ○시○분 코스000° 속력 00노트 현재 위치 북위○도○분 동경○도○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풍속○m/s 파고○m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선장님 사고 발생사실 여수 운항관리센터 및 해경에 보고 했습니다.

항해사A : 수색인명구조요원 4명 좌현선미갑판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현재 싱글턴(또는 윌리엄스턴) 사용 중이다. 익수자 위치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라.

항해사A : 익수자 발견되면 보고하겠습니다.

좌현 선수 약 80m 11시 방향에 익수자 육안 관측되고 있습니다.

선 장 : 양지 구조정 요원 탑승 후 강하 준비할 것.

항해사A : 구조정 요원 탑승 후 강하 준비하겠습니다.

구조정 요원 탑승 및 강하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구조정 수면까지 강하하고 이탈하여 구조작업에 임하도록

항해사A : 구조정 강하 및 이탈 완료 하였으며, 익수자에 접근하여 구조 하겠습니다.

현재 익수자 11시 방향 30미터 남았습니다. 계속 접근하겠습니다.

현재 익수자 11시 방향 10미터 남았습니다. 접근 후 구명부환 투하 하겠습니다.

선 장 : 양지 익수자 풍상측을 향해 투하하도록

항해사A : 선장님, 현재 익수자 인양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강상태는 외관상 양호합니다.

본선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인명구조요원 4명 이상없습니다.

선 장 : 양지, 항해사B는 여수 운항관리센터 및 해경에 현재 상황 통보하고 육상이송 요청 할 것.

상황종료

■ 시나리오 4 : 좌초 및 오염방제훈련

상황진행 : 20_ _년 _ _월 _ _일 여객 400명, 승무원 7명 승선후 0900시 여수 여객선 터미널을 출항하여 거문항으로 향해하던 중 초도 부근 해상에서 좌초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좌초 및 해양오염방제 훈련 실시
항해중 비정상적인 충돌음과 동시에 소각도 경사가 발생함.

선 장 : 총원 좌초사고 부서배치, 항해사B 비상신호 발령 할 것 전 선원 좌초사고 배치불어, 좌초사고 배치불어! (채널 00번 2회반복)

전 선 원 : 좌초사고 배치불어!(3회 복창)

항해사B : 좌초사고 비상신호 발령(좌초사고 신호-장음 5회)

선 장 : 최소 당직자를 제외한 전선원 브릿지 집합할 것

항해사A : 좌초사고 부서 0명 집합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항해사A는 전 VOID 탱크를 점검하고 양현 측심을 실시 후 보고하라. 갑판장은 수밀문 폐쇄 확인하고 승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객실 전반 순찰하여 선체 주위 이상유무를 확인 후 보고하라. 기관사B는 연료유 탱크 측심하라. 항해사B는 좌초신호(흑구3개)를 게시하라.

기관사B : 연료유 탱크 측심 양지 했습니다.

항해사A : VOID 탱크 점검 및 측심 양지 했습니다.

항해사B : 흑구 게양 양지 했습니다.

갑 판 장 : 여객 안내 및 순찰 양지 했습니다.

항해사A : 선장님, 전 VOID 탱크 확인결과 이상 없습니다. 측심 결과 좌현 수심 1.5미터.저질은 모래입니다. 그런데 본선 좌현 현측 주위에서 연료유로 추정되는 약 5 입방미터의 기름띠가 발견되었습니다.

상 황 : 유류 유출 확인되어 오염방제부서 배치 발령

선 장 : 현시각부터 오염방제부서배치불어 오염방제부서배치불어, 항해사B는 비상신호 발령 할 것.

전 선 원 : 오염방제 배치불어!(3회 복창)

항해사B : 오염방제부서배치 발령(오염방제부서배치신호 발령-장음 5회)

항해사A : 선교, 현장 오염방제부서 4명 선미갑판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선 장 : 지금부터 전구역 절대 금연을 실시한다. 현장반은 좌현에 발견된 기름띠 제거 작업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기관장 및 기관사는 유출원인 파악에 총력을 기하라.

항해사B : 선장님 좌초 및 해양오염 발생사실을 본사, 운항관리센터 및 해경에 통보하겠습니다.

여수 운항관리센터(본사/해경), 여기는 HAMEL호 입니다. 현재 본선에 좌초 및 해양오염 발생되어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간은 ○시 ○분 코스○ 속력○ 현재위치 북위○도○분 동경○도○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풍속○ 파고○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선장님! 사고발생사실을 본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해경 및 해군이 즉시

출동 예정입니다.

선 장 : 안내방송/ 승객 여러분 HAMEL호 선장입니다. 현재 본선은 좌초사고 발생으로 인해 발생된 소량의 기름 유출로 인해 방제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모든 구역 흡연을 금지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해경과 해군에서 출동하여 30분내 도착 예정이오니 동요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앉아서 다음 지시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장 : 선장님! 좌현 연료유 탱크의 측심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름유출이 좌현 연료유 탱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좌현 연료유를 우현 연료유 탱크로 이송하겠습니다.

선 장 : 양지했습니다. 지금즉시 우현 연료유 탱크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송 할 것.

기관사A : 선교, 기관실 좌현 연료유 탱크를 제외한 기관실은 이상없습니다.

기 관 장 : 선장님 우현 연료유 탱크로의 기름이송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선 장 : 양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 후 보고 바랍니다.

항해사B : 선장님 현재 방제선과 예인선 도착했고. 본선주위 오일펜스 설치중이며, 방제선에서 방제 작업 시작 하겠다고 연락왔습니다.

선 장 : 양지, 기관장은 양현 기관 사용 가능 확인 바랍니다.

기 관 장 : 예, 양현 기관 사용 가능하며 좌현 연료유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전 승무원에게 알린다. 현재 연료유 이송 완료하였으며 기관사용 및 예인선을 이용하여 안전한 수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항해사B, 현재 상황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현 상황에 대한 보고하고 기관장과 항해사B는 사고와 관련된 상세한 기록유지할 것

상황종료

■ 시나리오 5 : 주기관사고 및 비상예인 훈련

상황진행 : 20_ _년 _ _월 _ _일 여객 400명, 승무원 7명 승선후 0900시 여수 여객선 터미널을 출항하여 거문항으로 항해하던 중 초도 부근 해상에서 주기관 고장 사고가 발생하여 비상예인하는 상황을 훈련 실시
부산항 출항후 기관당직자 기관사B가 우현측 해수펌프가 누수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선장 및 기관장에서 보고한다.

기 관 장 : 선장님, 현재 우현 기관정지하고 점검결과 누수량이 많아 현장수리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 장 : 총원 주기관사고 대응부서배치, 항해사B 비상신호 발령 할 것. 전 선원 주기관사고 대응부서 배치붙어, 대응부서 배치붙어“(채널 00번 2회반복)

전 선 원 : 주기관사고 대응 배치붙어!(3회 복창)

항해사B : 주기관 사고 비상신호 발령(주기관 사고 신호발령 - 장음 5회)

선 장 : 항해사B는 주변 선박들의 동정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후구 2개를 게양하고 경고 음향신호를 울릴 것. 또한 운항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에도 보고할 것.

항해사B : 여수 운항관리센터, 여기는 HAMEL호 입니다. 현재 본선 우현 주기관 해수펌프 누수가 발견되어 긴급조치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간은 ○시 ○분 코스○ 속력○ 현재 위치 북위○도○분 동경○도○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풍속○ 파고○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선 장 : 항해사A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투묘준비 하라.

항해사A : 선수 투묘준비 하겠습니다.

기 관 장 : 우현측 주기관 해수펌프를 사용할 수 없으니, 비상 LINE을 연결 하겠습니다.

선 장 : 비상 LINE을 연결 실시하시오. 항해사B는 상세한 기록 유지할 것.

안내방송/ 승객여러분 HAMEL호선장입니다. 현재 본선은 기관고장으로 인해 비상조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해경과 해군에서 출동하여 30분내 도착 예정이오니 동요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앉아서 다음 지시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장 : 선장님! 비상LINE 연결 후 작동테스트 하였으나 작동이 불가합니다.

선 장 : 양지, 예인선 요청하였으니, 도착할 때까지 대기 하도록.

상 황 : 비상예인부서 배치 발령

항해사B : 선장님 좌현 11시방향 2마일 비상예인을 위해 예인선 1척 접근중입니다.

선 장 : 현 시각부터 비상예인부서 배치붙어 비상예인부서 배치붙어, 항해사B는 비상신호 발령할 것.

전 선 원 : 비상예인 배치붙어!(3회 복창)

항해사B : 비상예인부서 배치 발령(비상예인부서 배치신호 발령-장음 5회)

선 장 : 기관장, 최저 속력으로 감속하고 항해사A는 예인선 접근 하는대로 좌·우현 토잉비트에 토잉라인 잡을 것.

항해사B : 여수 운항관리센터/ 여기는 HAMEL호 입니다. 현재 본선에 기관고장으로 인해 예인

선의 도움을 받아 여수여객터미널로 이동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항해사A : 선장님 좌·우현 토잉비트 잡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본선 선원들 충분한 거리를 두고 대기하겠습니다.

선 장 : 양지, 안전을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대기할 것.

안내방송/ 승객여러분 HAMEL호 선장입니다. 현재 본선은 기관고장사고 발생으로 인해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여수항 여객터미널로 이동중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동요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앉아서 다음 지시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종료

■ 시나리오 6 : 충돌사고 및 방수대응훈련

상황진행 : 20__년 __월 __일 여객 400명, 승무원 7명 승선 후 0900시 여수항을 출항하여 거문항으로 항해하던 중 초도 부근 해상에서 미확인 수중물체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우현 선수 VOID에 발생한 파공을 대응하는 상황을 훈련 실시.

선 장 : 기관장 지금 즉시 엔진 정지하고 항해사B는 사고시간, 위치 등 자세한 기록 실시하고 여수 운항관리센터에 현재 상황 보고할 것.

항해사B : 여수 운항관리센터, 여기는 HAMEL호 입니다. 현재 본선 우현 선수 미확인 물체와 충돌하여 주기관 정지 후 정선 중입니다. 현재 긴급조치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간은 ○시 ○분 코스○ 속력○ 현재 위치 북위○도○분 동경○도○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풍속○ 파고○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현장 확인 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 장 : 총원 충돌사고 대응 부서배치, 항해사B 비상신호 발령 할 것. 전 선원 충돌대응 부서 배치붙어, 충돌대응 부서 배치붙어“(채널 00번 2회반복)

전 선 원 : 충돌사고 대응 배치붙어!(3회 복창)

선 장 : 항해사A는 VOID(S)구역 사운딩 실시하고, 현장확인 후 보고할 것. 항해사B는 객실 구역 환자 확인 할 것.

안내방송/ 승객 여러분 HAMEL호 선장입니다. 현재 본선은 미확인 물체와 충돌 발생으로 인해 현장 확인 중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동요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안전벨트 착용 후 앉아서 다음 지시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해사B : 선장님 여객 확인 결과 경미한 타박상 환자 1명있습니다.

선 장 : 양지, 항해사B는 주변 선박들의 동정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흑구 2개를 게양하고 경고 음향신호를 울릴 것. 또한 운항관리센터에도 보고할 것.

항해사B : 여수 운항관리센터, 여기는 HAMEL호 입니다. 현재 본선 미상의 물체와 충돌하여 긴급조치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간은 ○시 ○분 코스○ 속력○ 현재 위치 북위 ○도○분 동경○도○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풍속○ 파고○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항해사A : 선장님 FORE VOID (S)현장에서 수면높이의 위치에서 약 가로세로 20센치의 파공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물은 바닥에서 발목 높이까지 차있으며, 분당 약 3m/s의 속력으로 침수하고 있습니다. 빌지펌프 사용해 배수작업 실시하고 쇄기로 파공 막겠습니다.

선 장 : 양지 최대한 신속하게 배출 및 파공을 막을 것. 항해사B는 현시간부로 방수대응 부서 배치 발령할 것.

상 황 : 방수대응부서 배치 발령

선 장 : 현 시각부터 방수대응부서 배치붙어 방수대응부서 배치붙어, 항해사B는 비상신호 발령할 것.

전 선 원 : 방수대응 배치붙어!(3회 복창)

항해사B : 방수대응부서 배치 발령(방수대응부서 배치 신호 발령-장음 5회)

항해사B : 선장님 해경 및 해군 출동하였습니다. 도착까지 약 30분정도 걸립니다.

선 장 : 양지, 항해사B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여객들 구명조끼 착용시킨 후 제자리 대기 하도록 안내 할 것.

안내방송/ 승객 여러분 HAMEL호 선장입니다. 현재 본선은 미확인 물체와 충돌 발생으로 인해 배수작업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동요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안전벨트 착용 후 앉아서 다음 지시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해사A : 선장님 파공부위 메공 완료 하였고 배수작업 진행중입니다. 배수작업 약 50%완료 되었습니다.

선 장 : 양지, 배수상황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

항해사A : 선장님 배수작업 완료하였고 파공부위 물새는 곳 없습니다.

선 장 : 양지, 입항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

상황종료

■ 시나리오 7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상황진행 : 20_ _년 _ _월 _ _일 여수 여객선 터미널 부두내 접안 대기 중 0900시 경 FORE VOID (P) 내 파공을 점검하던 갑판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것을 가정하여 밀폐구역 구조 훈련을 실시.

항해사A : 브릿지-선장님, FORE VOID (P) 파공 점검중이던 갑판장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졌습니다.

선 장 : 양지. FORE VOID (P) 의식불명자 발생. 전선원 현장요원 배치하라.

전 선 원 : 밀폐구역 진입구조 배치불어(3회 복창)

항해사B : 밀폐구역 진입구조 배치 발령(밀폐구역 진입구조 신호 발령-장음 5회)

선 장 : 항해사A는 산소농도 측정 후 보고할 것.

상 황 : 선장은 유선전화를 통해 본사, 운항관리센터 및 119에 구급차 지원 요청한다.

항해사A : 선장님 산소농도 측정 결과 21프로 이상으로 산소농도 이상 없습니다. 구조반 항해사A 및 기관사A 2명 진입 허가 요청 드립니다.

선 장 : 추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진입하라.

기 관 장 : 선장님 현재 환자 이송을 위한 현장 작업반 대기중입니다.

항해사A : 선장님 갑판장 상태 확인 결과 희미하게 의식이 있으며 충격에 의한 의식 불명인것 같습니다. 즉시 구조하겠습니다.

선 장 : 양지, 구조중 2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항해사A : 선장님 구조반 갑판장 구조 완료 하였습니다.

선 장 : 양지 현재 119 구급대가 곧 도착예정이니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갑판으로 갑판장을 옮겨 대기하다가 119에 인계하도록.

상 황 : 119 구급차 도착

항해사A : 선장님 119 도착 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갑판장 119에 인계하겠습니다.

선 장 : 양지

상황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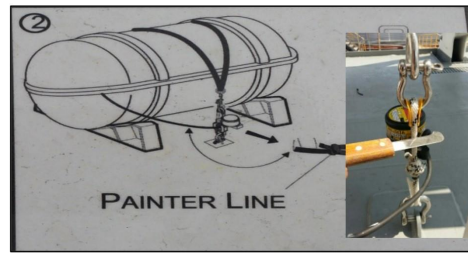
구명설비 사용법

구명뗏목 사용 설명서

LIFERAFTS IN ROUND CONTAINER OPERATING INSTRUCTIONS



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② 구명뗏목 고정줄을 칼로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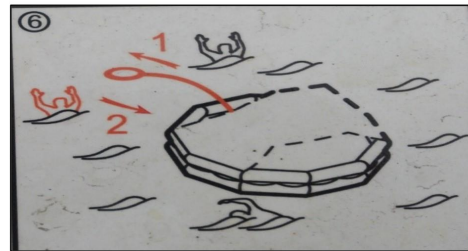
③ 구명뗏목을 투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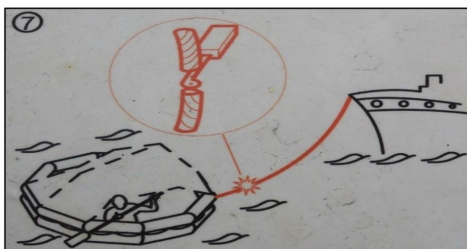
④ 팽창줄을 잡아당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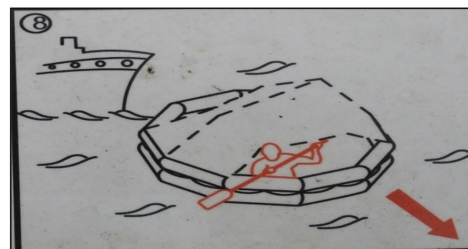
⑤ 슬라이드 설치 후
구명뗏목으로 뛰어내린다.



⑥ 해상에 표류중인 사람을
구명뗏목에 태운다.



⑦ 본선의 연결줄을 절단한다.



⑧ 가능한 본선에서 멀리 떨어진다.

※ 상기는 선교 원격 작동이 불가하였을 경우에 한함

소화기 사용법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객선에서 훈련 및 비상 시 사용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비상배치(해제)신호 : ■■■■■ (장음 5회 반복 후 비상배치 방송 : 00구역 00발생 전원 비상배치)
 - 항계내 화재신호 : ■■■■■ (장음 5회 반복)
 - 퇴선 신호 : ●●●●●●■ (단음 7회후 장음 1회)
- 화재 발생 시
 - 화재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장소에 화재 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주위에 비상벨이 있는 경우 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퇴선상황 발생 시
 - 선내방송과 비상신호를 청취한다.
 - 주위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탈출한다.

[붙임 12]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구분	연번	장비 · 시설	수량	설치장소
항해	1	레이더 (JMR-541, JMR-5482)	2	선교
	2	ECDIS(전자해도시스템 WARTSILA RS8)	1	선교
	3	VDR(항해기록장치 JRC JCY-1900)	1	선교
	4	AIS(선박자동식별장치 JRC JHS-183)	1	선교
기관	1	주기관(4 x MTU 16V2000 M72)	4	기관실
	2	발전기(CATERPILLAR C4.4 TA x 2)	2	기관실
	3	워터젯(KAMEWA A56Ⅲx 4)	4	워터젯룸
통신	1	VHF(SAILOR TF 7224A)	2	선교
구명	1	구명조끼(성인용)	452	선내전체
	2	어린이용 구명조끼	45	선내전체
	3	유아용 구명조끼	11	선내전체
	4	구명부환(30M 구명줄 붙이)	4	1층 비상탈출구 2층 선미 갑판
	5	구명부환(자기점화등)	2	선수갑판
	6	구명부환(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원격투하	2	좌,우현 선교데크
	7	팽창식구명뗏목(150인용)	4	선수양현,선미양현
	8	해상탈출장비	4	1층 좌 · 우현 현문 선미 보관함
	9	구조정	1	1층 선미
	10	쌍방향 VHF 무선전화장치	3	선교
	11	레이다 트랜스폰더	2	선교
	12	E.P.I.R.B	2	선교
	13	구명줄 발사기	4	선교
	14	낙하산붙이 신호	4	선교
	15	응급의료구	1	선교
	16	방수복	7	선미창고
소화	1	CO ₂ 소화기 5KG	3	기관실 좌 · 우현 선교
	2	소화기(9L FOAM)	3	선원실, 펌프룸
	3	소화전	8	우현 탱크룸, 외부갑판
	4	소화기(9kg POWDER)	4	1층 기관실입구 기관실 좌 · 우현
	5	소화기(9kg WATER)	4	1·2층 객실내
	6	고정식 CO ₂ 소화설비	1	1층 선미

[붙임13]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분류	관련 문서
영구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증서 ○ 효력이 영속하는 각종 증서 ○ 운항관리규정 관계 ○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 해양사고/준사고 보고서 ○ 기타 선박운항과 관련한 기록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기록
5년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심사 및 부적합사항 관계 ○ 선박검사 관계 ○ 선박점검 관계 ○ 해양오염방지 관계 ○ 선내비상훈련에 관한 기록 ○ 선원교육 관계 ○ 해사정보(사고속보, 항행정보, 기관정보, 항만정보) ○ 외부기관 점검 관련 기록
3년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관리 관계 ○ 선원자격 관계
1년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6개월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기록 ○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기록

[붙임14] 문서관리대장

□ 서류

구 분	문 서 명	보 존 기 간	관 리 자
1	선박안전위원회	5년	선장
2	공문서 수신대장	3년	1등항해사
3	해사정보	5년	
4	사내업무문서	5년	
5	해도 간행물 소개정 기록부	5년	2등항해사
6	항행통보 수급 현황표	5년	
7	선박도면 목록표	영구	선장
8	선원 업무 인수인계서	5년	선장
9	방선점검결과 보고서	5년	선장
10	선박 일일업무 보고서	5년	2등항해사
11	월 정박 당직표	3년	
12	입·출항 전·후 점검표	3년	1등항해사
13	특수 항해 점검표	3년	
14	항해계획표	3년	
15	특별 보호 여객 명부	3년	
16	선내 방송일지	3년	
17	위험물품 관리 기록부	3년	
18	PMS ITEMS	영구	선장, 기관장
19	PMS 월간 정비계획 실행 보고서	5년	
20	PMS CHECK LIST	5년	
21	DOCKING INDENTS	5년	
22	법정비품 및 주요기자재 LIST	영구	
23	기부속 청구서	5년	1등항해사, 기관사
24	선용품 청구서	5년	
25	외주정비수리 신청서	5년	
26	INVENTORY FOR SPARE PART	5년	선장, 기관장
27	의약품 현황표	3년	1등항해사
28	선박위생 관리점검표	3년	
29	교육 훈련 계획 시행표	5년	
30	교육 훈련 기록표	5년	선장, 기관장
31	승선자 CHECK LIST	5년	
32	사고 보고서	5년	1등항해사
33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 근로기록 서류	5년	
34	부적합사항 관리대장	5년	
35	부적합사항보고서 및 점검표	5년	
36	위험 및 고소작업 허가서	5년	
37	운항관리규정	영구	선장
38	복원성 자료	영구	선장
39	여객선이력관리장부, 여객선 안전정보	영구	
40	항해일지	영구	
41	기관일지	영구	기관장
42	Oil Record Book	5년	1등기관사
43	Garbage Record Book	5년	1등항해사
44	GMDSS Radio Log Book	5년	

□ 도면목록

연번	도면(명)	보존기간	관리자
1	General Arrangement	영구	선장
2	Lifting Plan	영구	선장
3	Hull structure midship section	영구	선장
4	Hull structure longitudinal section	영구	선장
5	Hull structure details	영구	선장
6	Hull structure typical frame	영구	선장
7	Shell plate thickness	영구	선장
8	Superstructure General construction plan 1	영구	선장
9	Superstructure General construction plan 2	영구	선장
10	Superstructure General construction plan 3	영구	선장
11	Superstructure General construction plan 4	영구	선장
12	Tank arrangement compartment plan	영구	선장
13	Hatches and doors plan	영구	선장
14	Fender arrangement	영구	선장
15	Mast construction	영구	선장
16	Cathodic Protection Plan	영구	선장
17	Propulsion Arrangement	영구	선장
18	Bilge system	영구	선장
19	Bilge water storage system	영구	선장
20	Internal fire fighting system	영구	선장
21	Fuel oil system	영구	선장
22	Cooling water system	영구	선장
23	Sanitary fresh and seawater system	영구	선장
24	Sanitary discharge system	영구	선장
25	Filling, sounding, deaeration	영구	선장
26	Lubrication oil system	영구	선장
27	Life saving plan	영구	선장
28	Fire control plan	영구	선장
29	Evacuation plan	영구	선장
30	Arrangement of Engine Rooms and Aft Peak Frames 0 up to 11	영구	선장
31	Arrangement of Pump Rooms, Frames 11 up to 17	영구	선장

□ 증서목록

연번	문서(명)	보존기간	관리자
1	선박국적증서	영구	선장
2	선급증서	영구	선장
3	선박검사증서	영구	선장
4	해양오염방지증서	영구	선장
5	무선국검사증명서(무선국허가증)	영구	선장
6	승무정원증서	영구	선장
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영구	선장
8	임명장(응급처치담당자, 안전담당자,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여객안전관리선원, 안전관리책임자)	영구	선장
9	보험증서(P&I, 선원, 선박, 여객)	영구	선장

[붙임 15] 내부심사절차서

1. 심사 구분

- 가. 정기내부심사 : 연1회 이상 선박/안전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
- 나. 특별내부심사 : 특정사유 발생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 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2. 내부심사 주요 내용

- 가. 회사 안전 목표/방침 이해 여부
- 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적합성 및 상호 모순성 여부
- 다. 문서 및 기록유지 관리상태, 부적합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
- 라.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3.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 가. 당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직급이 과장 이상인 자
- 나. 선박안전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4. 내부심사 계획 및 준비 절차

- 가.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1)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연도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심사대상에게 심사 실시 10일전까지 통보한다.
 - 2) 내부심사 계획서에는 심사목적, 심사종류, 심사대상 심사범위, 심사일정, 심사(심사원)구성, 내부심사 점검표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심사수행

- 1) 시작회의
 - 심사팀장은 심사 시작 전 심사자, 피심사자를 참석시켜 아래 사항을 협의한다.
 - 심사의 목적 및 범위, 심사방법, 심사자 소개 심사절차 및 일정
 - 이전심사의 미결사항, 피심사부서 심사 담당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
- 2) 심사수행
 - 심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 및 내부심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다.
 - 심사대상 또는 선박의 업무진행에는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심사한다.

-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피심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피심사부서 담당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
- 피심사부서장 또는 선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 및 조치기한을 심사팀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종료회의

심사팀장은 피심사부서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아래의 심사결과를 설명 협의한다.

-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부적합사항 또는 권고사항 확인 및 설명
-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절차 및 조치시한 확인 및 필요시 재조정
- 운항관리규정 개선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

5. 심사결과

가. 결과보고 절차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점검표를 작성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고경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 1) 해당부서에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2)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보고서를 해제한다.

6. 최고경영자는 내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 16]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내부심사 부적합사항 보고서		부적합번호 (부)	
		발행일자	
<input type="checkbox"/> 내부심사 <input type="checkbox"/> 고객불만사항 <input type="checkbox"/> 자체발행		대상부서	
※ 부적합사항 1. 관련문서(근거) 2. 부적합내용		<input type="checkbox"/> 중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경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권고사항	
해당부서장	심사자(발행자)	심사팀장	
※ 부적합사항 검토 및 시정조치 방안		조치기한	
시정조치부서	검토(심사)일	검토(심사)자	
※ 시정조치내용	시정조치일자	시정조치부서장	
※ 시정조치확인결과		<input type="checkbox"/> 종결승인 <input type="checkbox"/> 재조치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승인	
▶ 시정조치 재시행시 신규번호:(부) - - - 일련번호부여			
확인일자		확인(승인)자	재조치기한
※ 유효성/효과 검토 결과		종결일자:	최종확인자:

내부심사점검표			심사대상		
			심사종류	년도(□정기 □특별)	
심사목적		심사기간			
운항관리규정 항목	부적합	권고	심사자 명단 및 심사일정		
1.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			책임심사자		
2.안전관리 조직					
3.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					
4.운항기준도					
5.선장의 보고사항			일반심사자		
6.위험물 취급					
7.여객 승하선 및 화물 적재					
8.선박 및 수송시설의 점검정비					
9.해양사고등 사고발생시 조치			부적합(총 건)		
10.여객준수사항의 전달			구분	중부적합(○)	건
11.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				경부적합(△)	건
12.문서 및 자료관리				권고사항	건
13.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원인 별 분석	절차내용 미흡	건
14.내부심사				절차 불이행	건
15.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평가				업무이해 미흡	건
합 계				시정조치 미흡	건
				증거(기록)미흡	건
			지원 미흡	건	
심사결과 요약 및 분석					
유첨	1.부적합사항 보고서 부				
작성일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주) 작성 → 책임심사자, 검토자 → 안전관리책임자, 확인자 → 사장					

[붙임 17] 여객선 정기 점검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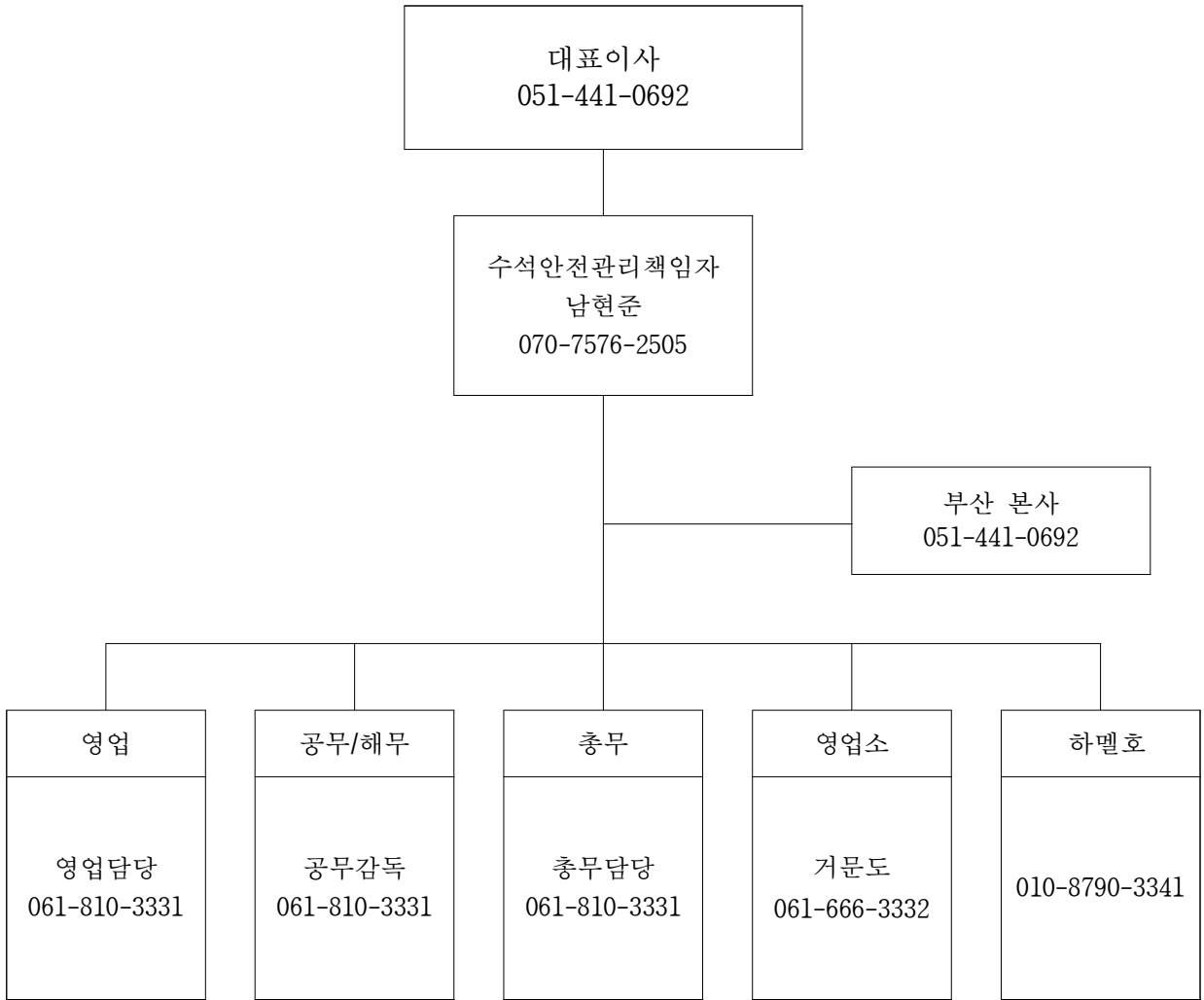
여객선 정기 점검표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관련)

※ 점검사항의 결과란은 양호는 ○, 보통은 △, 불량은 ×로 표시합니다.

선명(선박번호)	()		기관마력	hp	
항로 및 항해구역			진수연월일	. . .	
점검사항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선체	선체 및 도장 상태		구명설비	구명기구 · 신호장치 상태	
	흘수 상태			진수장치 상태	
기관	기관정비 상태		화물	위험물 적재장소의 관리 상태	
통신	통신기 작동 상태		일지기록	비상훈련의 이행여부	
				비상시의 임무숙지 상태	
항해 용구	항해계기 정비 상태				항해일지의 기록여부
	조타설비 상태		보안시설	비상용 경보장치 상태	
	달 · 쇄사슬 및 로프 상태			보안 · 청원경찰의 승선 유무	
	속구(屬具) 및 비품 비치 상태				
소방 설비	소화 및 비상펌프 정비 상태		위생설비 기타	여객선의 청결 상태	
	소화전 · 호스 · 소화기 상태			화장실의 위생 상태	
	소방수통 상태			방송 · 난방 · 통풍 시설	
육상 시설	육상 승선 · 하선 시설		기타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종선의 운영 상태			선원의 처우 상태	
위 지적사항의 시정여부					
지적사항	시정여부		지적사항	시정여부	
이번의 지적사항			시정기한		
점검일시 : 년 월 일			점검 및 입회자 선 장 ①, 사업자 ①		

[붙임18] 안전관리조직도



※ 조직내 상호간 연락은 사내 비상연락망에 의함